koddi.or.kr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 25-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2025. 9.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한기명(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효정(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이사)

이호성(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연구원)

발간사

장애인의 삶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입니다. 특히 돌봄의 부담이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고, 지원체계의 공백이 장기간 누적되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점차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확대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권리, 삶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과 정서적·사회적 고립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권익옹호를 위한 공공후견제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와 지원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후견은 단순한 보호의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권리 기반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연구보고서가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미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모든 장애인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포용사회의 실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연구 과정에 참여해주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 관계기관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해 준 연구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목 차

연구요약 ····· i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

Ⅱ. 이론적 배경 ····· 5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 5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운영 현황 ····· 13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관련 선행연구 ····· 22

Ⅲ. 국내 후견 관련 사업 운영 현황 ····· 32

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 32
2. 치매공공후견사업 ····· 36
3. 소결 ····· 42

Ⅳ. 해외 공공후견 관련 유사 사업 운영 현황 ····· 43

1. 일본 ····· 43
2. 소결 ····· 62

Ⅴ. 현장전문가 질적 조사 ····· 64

1. 조사 개요 ····· 64
2. 분석 결과 ····· 67
3. 소결 ····· 88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Ⅵ. 결론 및 제언 ····· 92

참고문헌 ····· 94

표목차

〈표 Ⅱ-1〉 성년후견의 유형별 본인의 행위능력 및 후견인의 권한 ····· 6
〈표 Ⅱ-2〉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건수 현황(2013~2023) ····· 7
〈표 Ⅱ-3〉 유형별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비율(2014~2023) ····· 8
〈표 Ⅱ-4〉 연도별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 누계(2014~2023) ····· 8
〈표 Ⅱ-5〉 대상자별 공공후견제도의 법률적 근거 ····· 10
〈표 Ⅱ-6〉 서울가정법원의 유형별 선임 후견인 변화 ····· 12
〈표 Ⅱ-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개요 ····· 15
〈표 Ⅱ-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추진체계별 기능 ····· 16
〈표 Ⅱ-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 18
〈표 Ⅱ-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관할 지역 ····· 19
〈표 Ⅱ-11〉 2024년말 기준 지역별 피후견인 현황(피후견인 기준 지역) ····· 20
〈표 Ⅱ-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연도별 활동현황(최근 5년) ····· 21
〈표 Ⅱ-13〉 연도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심판청구현황(최근 5년) ····· 21
〈표 Ⅱ-1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국비 및 지방비의 합) ····· 22
〈표 Ⅱ-15〉 발달장애인 금전관리 제도 비교 ····· 29
〈표 Ⅲ-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목표 ····· 32
〈표 Ⅲ-2〉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개요 ····· 33
〈표 Ⅲ-3〉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개요 ····· 34
〈표 Ⅲ-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추진체계 ····· 34
〈표 Ⅲ-5〉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의 후견담당자 교육 ····· 36
〈표 Ⅲ-6〉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요 ····· 37
〈표 Ⅲ-7〉 사업추진체계 ····· 38
〈표 Ⅲ-8〉 연도별 후견심판 청구 접수 건수 ····· 41
〈표 Ⅲ-9〉 지역별 후견심판 청구 접수 건수 ····· 41
〈표 Ⅲ-10〉 대상별 공공후견 비교 ····· 42
〈표 Ⅳ-1〉 권리옹호 지원 네트워크 4가지 역할 ····· 45
〈표 Ⅳ-2〉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 45

〈표 Ⅳ-3〉 2025년도 오오타시 시민후견인 양성강좌 커리큘럼 ····· 47
〈표 Ⅳ-4〉 권리옹호 영역별 센터 설치 ····· 49
〈표 Ⅳ-5〉 나고야시 성년후견 관련 대처 ····· 50
〈표 Ⅳ-6〉 나고야시 성년후견안심센터 사업내용 ····· 51
〈표 Ⅳ-7〉 시민후견인 수임에 적절한 사안 ····· 51
〈표 Ⅳ-8〉 나고야시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등록기준 ····· 52
〈표 Ⅳ-9〉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연도별 등록자 수 ····· 52
〈표 Ⅳ-10〉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연령대별 등록자 수 ····· 53
〈표 Ⅳ-11〉 시민후견인 후보자 주요 자격 보유 현황 ····· 53
〈표 Ⅳ-12〉 시민후견인의 지역활동·복지활동 경력 ····· 54
〈표 Ⅳ-13〉 시민후견인 직업 이력 ····· 54
〈표 Ⅳ-14〉 시민후견인 수임 현황 ····· 55
〈표 Ⅳ-15〉 피후견인(사사다 요리코 씨) 개요 ····· 58
〈표 Ⅳ-16〉 법인후견 활동 내역 ····· 59
〈표 Ⅳ-17〉 당사자 밀착형 후견 활동 내역 (1) ····· 61
〈표 Ⅳ-18〉 지역복지형 후견 활동 내역 (2) ····· 62
〈표 Ⅴ-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정보 ····· 65
〈표 Ⅴ-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정보 ····· 66
〈표 Ⅴ-3〉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질문 ····· 66
〈표 Ⅴ-4〉 공공후견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 90
〈표 Ⅴ-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 91

그림목차

[그림 Ⅰ-1] 연구수행절차 ····· 4
[그림 Ⅱ-1]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건수 현황 추이(2013~2023) ····· 7
[그림 Ⅱ-2] 연도별 후견사건 누계 ····· 9
[그림 Ⅱ-3]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 누계 ····· 9
[그림 Ⅱ-4]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지원 체계도 ····· 18
[그림 Ⅲ-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의 업무수행 개요 ····· 35
[그림 Ⅳ-1] 오오타시 시-중핵기관-사회복지협의회 전체상 ····· 44
[그림 Ⅳ-2] 전체상 ····· 46
[그림 Ⅳ-3]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 권리옹호 추진 체제 ····· 49
[그림 Ⅳ-4]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치 및 역할 ····· 57
[그림 Ⅳ-5] 사사다 씨 다학제팀 지원 체계 ····· 60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신청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후견인 배정까지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UN 장애인권리협약은 후견 중심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축소하고, 개인의 의지와 선호에 기반한 의사결정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운영 과정에서는 당사자 의사 반영 부족과 후견인 배정 지연 등 현장 적용의 한계가 있음.

○ 공공후견은 한 명의 후견인이 당사자의 신상 전반과 재산관리를 모두 전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공공후견제도의 요구도와 지원 필요성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당사자 관점에서 의사결정지원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이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의 어려움과 현장전문가의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
○ 일본의 다학제 팀 기반 후견 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제도 개선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함.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의사결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개선방향과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이론적 배경

1.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 능력이 어려운 성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했음.
○ 후견 유형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으로 구분되며,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결정함.
○ 제도 시행 이후 후견(감독) 사건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후견이 필요한 인구 규모에 비해 이용률은 낮은 수준임.
○ 후견인은 친족후견인, 전문가후견인, 공공후견인으로 나뉘며, 특정후견에서는 공공후견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법인후견인은 조직 기반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점차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임.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운영 현황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의사결정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지자체·발달장애인지원센터·공공후견법인이 함께 수행하고 있음.

○ 사업 목적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대상자 발굴·후견인 추천·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후견이 개시됨.

○ 운영 체계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2개 공공후견법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후견인 교육·후보자 추천·심판청구 지원 등이 주요 기능으로 수행됨.

○ 2024년 기준 피후견인은 1,545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0.55% 수준이며, 지역 간 편차와 후견인 매칭의 제한성이 존재함.

○ 예산 동결과 후견인 양성 속도 부족 등으로 신청 대기자가 지속 증가하여,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공공후견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나타남.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관련 선행연구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제도 도입 전·후, 그리고 최근 정책 대안 논의의 세 흐름으로 정리함.

○ 제도 도입 이전 연구에서는 자기결정권과 정상화 이념, 인권친화적 성년후견제 설계, 각국 후견제도 비교 등을 통해 후견의 이론적·법적 기반을 마련했음.

○ 제도 시행 이후 연구들은 특정후견 제도에 집중하여, 후견의 역할 및 범위, 후견법인의 자격·운영 구조 미비 등 현장 실천상

의 한계를 지적함.

○ 최근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와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자립에 필수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기능을 상호 보완·분담하는 새로운 제도적 방향을 모색함.

○ 공공후견제도를 단순 확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후견에 필요한 분야별 서비스의 기능적 연계·통합을 모색하여 권리 보장 중심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을 제기함.

Ⅲ. 국내 후견 관련 사업 운영 현황

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 지원사업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2017년 비자의입소 규정 강화 이후,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음.

○ 후견인을 통해 치료·요양·지역사회 이전 등 주요 생활결정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을 제공하며, 자기결정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목표로 함.

○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제도가 강화될 예정임.

○ 공공후견법인은 2023년부터 2개 기관으로 재편되어 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거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정후견(예외적 한정후견 포함)을 수행하고 있음.

○ 법인은 후견인 모집·교육·배치와 후견심판 청구 지원 등을 담당하며, 현재 약 486건의 후견을 관리하고 있음.

2. 치매공공후견사업

○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치매관리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의 후견인 선임과 활동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
○ 후견대상은 가족 부재·지원 곤란·저소득층 치매환자를 우선으로 하며, 공공후견인이 재산·신상 관련 의사결정지원을 수행함.
○ 사업은 보건복지부–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중앙치매센터로 이어지는 다단계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후견심판청구·후견감독 역할이 분담되어 있음.
○ 2023년 기준 서비스 이용자는 266명, 후견인은 227명으로 지역 간 운영 격차가 크고, 양성된 후견인 중 상당수가 실제 활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남.
○ 이는 치매공공후견의 인력 활용, 지역 간 수행역량, 후견 심판청구 체계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보여줌.

3. 소결

○ 발달장애인·정신질환자·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은 모두 정부 예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음.
○ 정신질환자·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2개의 공공후견법인이 관할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정신질환자는 법인이 직접 후견을 수행하고, 발달장애인은 법인이 주로 후견인 양성·교육·관리

역할에 한정되어 있음.

○ 활동비 구조는 유사하나 상한액과 운영 방식은 사업 유형별로 차이가 있으며,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심판 청구가 연 600건 수준으로 가장 많음.

○ 공공후견의 상당 부분이 개인후견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인후견의 전문성 차이와 지역 간 역량 격차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Ⅳ. 해외 공공후견 관련 유사 사업 운영 현황

1. 일본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치매, 지적·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사람에게 재산관리와 개호·입소계약 등을 대신 수행하는 보호·지원체계임.

○ 제도는 법정후견(후견·보좌·보조)과 임의후견으로 구성되며, 판단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 유형이 구분됨.

○ 법정후견은 가정재판소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며, 임의후견은 당사자가 충분한 판단능력을 갖춘 시기에 향후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함.

○ 이러한 이중 구조는 다양한 수준의 의사결정지원 수요에 대응이 가능함.

1) 시-중핵기관-사회복지협의회 간 전체상

○ 일본은 2017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2021

년부터 '중핵기관'을 설치하여 지역 기반의 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중핵기관은 권리옹호 코디네이션(사령탑), 지역 협의체 운영(사무국), 전문직 자원 확보·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임.

○ 시(市), 중핵기관,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하여 후견에 필요한 영역별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후견 이용자에게 의료·복지·개호 등 전문 지원을 연계함.

○ 예시 사례인 오오타시는 시와 성년후견지원센터가 공동 운영하며, 당사자의 의사 존중 및 지역 내 권리옹호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전체 구조는 지역 내 권리옹호, 상담, 제도 이용 촉진, 후견인 지원이 하나의 체계로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지역 기반 모델로 운영되고 있음.

2) 사회복지협의회(오오타시 기준)

○ 오오타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사회복지법인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지역 복지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

○ 후견 개시 전후에 법률·복지 전문직과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조정하며, 지역 복지 마을 만들기의 중심 조직으로 운영됨.

○ 재원은 지자체 보조금, 주민 회비, 공동모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됨.

○ 시민후견인 양성을 위해 약 9일간의 교육과 사례검토회를 포함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3)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 성년후견제도 실시 체제

○ 나고야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2020~2024)을 바탕으로 성년후견안심센터(중핵기관)와 법인후견센터를 중심으로 권리옹호·상담·후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성년후견안심센터는 제도 상담, 신청 지원, 홍보, 시민후견인·친족후견인 지원 등을 담당하며, 시민후견인 양성교육과 뱅크 등록 운영을 통해 후견인 인력을 확보함.
○ 시민후견인은 고령층 비중이 높고 다양한 직업·경력을 가진 주민으로 구성되며, 주 1회 면회와 정기 보고 등 감독체계를 통해 활동함.
○ 법인후견은 사회복지협의회가 후견을 수임하고, 시민후견인이 법인후견 지원인으로 참여하여 면회·생활비 전달·우편물 확인 등 현장 지원을 담당함.

4) 법인후견인 및 시민후견인 활동의 실제

○ 히가시히로시마시는 법인후견인을 중심으로 직원·후견지원인이 팀을 이루어 개호·의료·재산관리를 함께 수행함.
○ 단독 후견으로는 복합적 과제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역 전문가와의 다학제 사례회의를 핵심 구조로 운영함.
○ 나고야시는 시민후견인 뱅크를 기반으로 정기 방문·의사소통 지원 등 당사자 밀착형 후견을 수행함.
○ 시민후견인은 욕구 파악과 관계 회복 등 생활 중심의 참여지원을 담당하며, 지역 내 제도 필요자 발굴에도 기여함.
○ 두 사례 모두 개인 중심 후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법인·전

문가·시민이 결합된 다층적 후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줌.

2. 소결

○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시정촌–중핵기관–사회복지협의회가 연계된 지역 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됨.
○ 사회복지협의회는 법률·복지 전문직과 지역지원자가 참여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해 후견 개시 전후를 통합적으로 지원함.
○ 후견 유형은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으로 구분되며, 지자체가 직접 후견을 청구하는 '시장신청'이 활발하게 활용됨.
○ 지자체와 사회복지협의회는 공무원 교육과 시민후견인 양성을 통해 후견 연계의 전문성과 인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 이는 국내에서도 지자체·지원기관·후견기관의 역할과 체계를 다시 정비하고, 지자체가 후견 연계와 관리·감독의 중심 역할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함.

Ⅴ. 현장전문가 질적 조사

1. 조사 개요

○ 질적조사는 발달장애·정신질환·치매 후견을 수행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공공후견법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정신질환·치매 후견 담당자 등 총 11명이 참여하였음.
○ 발달장애인과 직접 소통하는 지원주택, 복지관, 탈시설지원단

등 기관 종사자 10명도 추가로 인터뷰하였음.

○ 인터뷰를 통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운영과정의 문제점, 기관별 역할, 개선 요구를 다각적으로 파악하였음.

2. 분석 결과

1) 공공후견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

○ 공공후견 신청 사유는 무연고, 사기·범죄 피해, 복지서비스 이용 곤란, 행정·법적 절차 대리 필요 등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후견인의 전문성 수준, 연령, 행정업무 수행 역량 등에 따라 신상·재산관리 등 후견서비스 전반에서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음.

○ 후견법인·지자체·법원 간 연계가 미흡하고, 후견법인에 대한 평가·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해 공공후견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후견인 1인에게 광범위한 업무(재산·의료·주거 등)가 집중되면서 과중한 부담과 소진, 이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이에 전문가들은 후견인 지원체계 강화, 교육·네트워크 확충, 체계적인 감독·관리제도 마련, 전문 후견기관 설립 등 공공후견 제도의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제기하였음.

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주체

○ 공공후견 선임 사유는 무연고, 금융·주거 계약 등 의사결정지원 필요, 반복적 사기·금전 피해 등으로 인한 보호 필요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음.

○ 가족후견 체계는 부모의 고령화, 비공식적 지지체계 단절, 가족의 부적절한 재산관리 등으로 인해 지속성과 신뢰성이 낮아 공공후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공공후견인의 자질 문제로는 복지서비스 정보 부족, 고령 후견인의 실무 수행 한계, 당사자 의사 확인 및 소통 부재 등이 지적되었음.

○ 제도적·구조적 한계로는 누구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현행 구조,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한 기관 간 갈등, 후견법인 모니터링이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는 등 감독체계 부재가 확인되었음.

○ 발전 방향으로는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의사결정지원 모델 구축,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전문가 양성, 지역 내 다양한 기관 간 네트워크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3. 소결

○ 시민후견 중심의 현 체계는 복지정보·서비스 연계 역량 부족, 행정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치매 어르신에게 필요한 후견서비스의 질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드러냈음.

○ 지자체·후견법인·법원 간 후견 감독체계는 실질적인 모니터링·수퍼비전 구조가 부재해 후견 활동의 질을 관리하기 어려움.

○ 후견인 1인이 재산·의료·주거 등 광범위한 의사결정지원 업무를 부담하면서 소진과 이탈이 발생하고, 역량을 갖춘 후견인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남.

○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후견인의 활동 지원체계(모니터링·수퍼비

전) 강화, 후견전문가 양성, 공식 네트워크 구축, 전문 후견기관 설립 등을 핵심 개선과제로 제시하였음.

Ⅵ. 결론 및 제언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인의 역량·감독체계·의사결정 지원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 전문기관 설립이 필요함.
○ 해외 사례처럼 후견전문가를 양성하고, 다학제 기반의 후견관리·의사결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공공후견인의 지위와 교육을 강화하여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전문가를 확보하고, 재산·의료·법률 등 복합사안을 대응할 장치를 마련해야 함.
○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별 의사결정지원 모델을 도입하고, 중앙·광역 단위의 다학제 위원회를 통한 감독체계를 갖추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발달장애·정신질환·치매 등 모든 대상자를 포괄하는 통합 후견전문기관(가칭 성년후견청) 설립이 제도개선의 핵심임.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성년후견제도’는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을 토대로 후견 계약을 맺고 선임된 후견인이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민법」제9조).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또한 「민법」 제14조의 2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근거하여 2013년 9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 자폐성장애인) 및 긴급하게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법원에서 판단한 기타 유형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에 한함)’이다. 법원이 특정후견 범위로 정해준 범위 내(통장개설 및 관리 처분에 대한 대리 권한,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이용계약 및 신청행위, 기타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대한 대리권)에서만 지원하고 있다(제철웅, 2017).

그러나 후견심판청구 과정에서 사회조사보고서 등이 제출서류로 작성되지만,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직접 묻기보다는 주변인을 활용하여 작성되고 있고, 후견이 개시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에서 피후견인(발달장애인 당사자)이 소외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이지은, 2022). 또한 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 따르면, “신청 대기자가 673명에 달하며,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려는 발달장애인들이 은행계좌 설립, 주택 계약, 의료기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 공공후견인을 신청했지만, 거의 1년간 대기를 하게 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에이블뉴스, 2024.10.21.).

UN 장애인권리협약 12조에 관한 일반논평에 따르면, '사회 참여에의 접근을 위한 핵심 요인인 법적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서로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하였고, 의사결정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정신의 불건강성' 및 기타 차별적 꼬리표가 법적 능력(법적 지위 및 법적 작용 포두 포함)을 부정할 적법한 근거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또한, '개선 방향으로 ① 행위능력 제한과 후견인의 법정대리권(대체의사결정)을 기조로 하는 현행 후견제도를 보완하여, 본인의 자기결정에 기초한 권리 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 ②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법적능력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포함할 것, ③ 모든 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효율적인 공공후견 ·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지원전달체계의 확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지원 의사결정 제도는 사람의 의지와 선호를 우선으로 하고 인권 규범을 존중하는 다양한 지원 방법으로 구성되며, 협약 12조의 준수를 보장하는 특정 핵심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그러나 정부는 위원회 권고를 따르지 않고, 2019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성년후견제도는 협약이 금지하는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위원회는 "피후견인의 권리는 사실상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 대체의사결정 제도를 폐지하고, 의사결정조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비마이너, 2022.9.13.).

공공후견인의 양성 및 배치 부족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후견사업이 발달장애인 1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후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타 서비스 연계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행 법령상 공공후견인 제도는 한 번 지정되면,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만 취소가능하며, 대리하는 범위도 의료기관 방문, 법률적 소송 대리 등 단순히 재산관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범위도 다양하다.

---

1) 〈2022년 UN CRPD 이행에 대한 대한민국 2, 3차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
위원회는 심리사회적 및/또는 지적 손상을 근거로 장애인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후견제도와 대체의사결정제도를 폐지해 가는 데 있어 진전이 없고, 이 체제를 의사결정지원제도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일정계획이 없음을 깊이 우려한다. 위원회는 장애인과 그들 가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 가능한 형식의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역시 우려한다. (a) 후견제와 피후견제를 포함한 대체의사결정제도를, 개별화된 지원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의지 및 선호를 존중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 교체할 것. (b) 장애인의 법적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의사결정지원 메커니즘에 대한 관계자 훈련과 개혁 절차에 장애인단체를 통해 장애인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보장할 것. (c)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점자, 수어 및 읽기 쉬운 자료와 같은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의 개발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며 장애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배포할 것.

종합하면, 양성되는 공공후견인의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후견법인은 1인의 공공후견인에게 장애인 당사자 1인을 매칭하여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한 질적 수준의 격차, 의사결정 장소에 후견인이 반드시 동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제철웅, 2017; 이은정, 김성천, 2018; 임소연, 이진숙, 2018; 김미옥, 김새봄, 유하얀, 2019; 김정인, 2022; 김효정, 조한진, 2023 등). 이마저도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을 아직 선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게 현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후견인 1인 매칭이 가장 많지만, 사회복지협의회가 공공후견의 주체가 되어 우울, 치매, 저장강박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한 법인 차원에서의 후견인 양성과 다학제 후견인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박인환, 2021). 또한 호주의 경우, 사법부 산하에 공공후견관리국과 공공신상보호국을 설치하고, 재산관리 법정후견인(administrator)과 신상보호인(guardian)이 각각 일종의 공무원 신분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후견 업무를 하도록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윤태영, 2014; 제철웅 · 박현정,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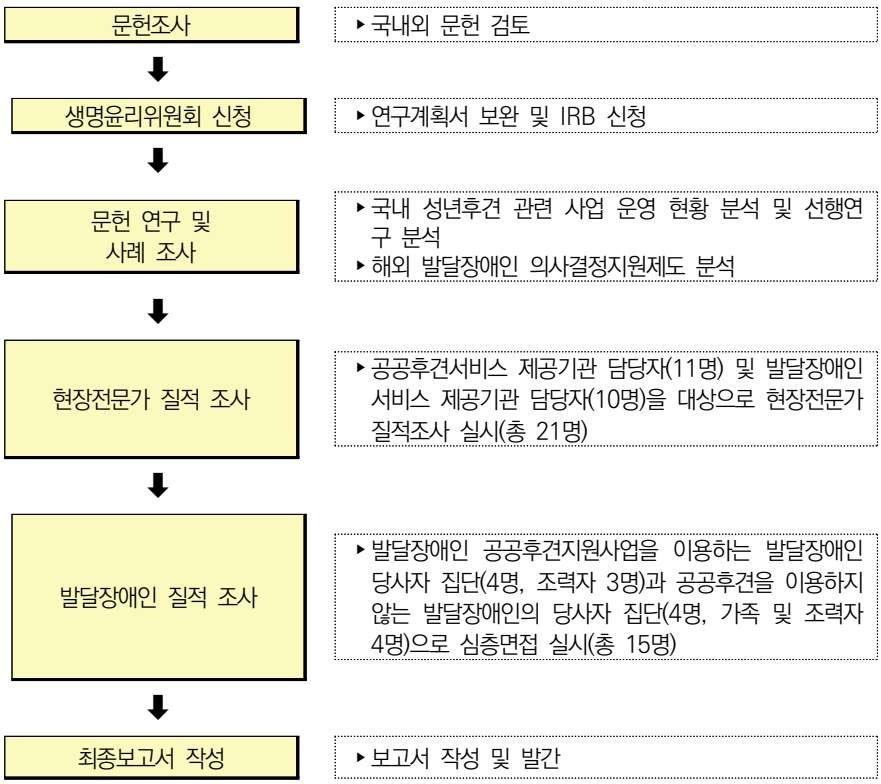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관계자를 중심으로만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이은정, 김성천, 2018; 임소연, 이진숙, 2018; 김미옥, 김새봄, 유하얀, 2019; 김정인, 2022; 김효정, 조한진, 2023), 발달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공공후견을 이용 또는 이용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제약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공공후견인 제도의 요구도 및 활용 분야를 탐색하고, 재산관리, 사무처리, 의료기관 방문 뿐 아니라 당사자 관점에서 효율적인 공공후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현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 여부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 현장전문가의 사업 개선방안, 해외사례를 통한 사업 운영체계 등을 검토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첫째, 현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지원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일본 사례와 같이 법인 내 다학제팀 후견인 양성을 위방안을 검토한다. 셋째, 호주 사례와 같이 공공후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의사결정지원방안 등 현행 제도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국내 적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수행절차를 거친다.



[그림 Ⅰ-3] 연구수행절차

Ⅱ 이론적 배경

1.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 성년후견제도의 소개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치매, 뇌손상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진 성인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기결정권과 현존능력의 존중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이다.[2] 성년후견제도는 가정법원의 결정 혹은 후견인이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되고,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에 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한다.[3]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해 운영되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① 경제적 문제로 한정된 지원이고, ② 후견인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고,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로 선고된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민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4]는 ①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②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③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도 가능해졌다.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이다.[5]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2) 후견의 유형은 성년후견과 미성년후견으로 구분됨
3)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4&ccfNo=3&cciNo=1&cnpClsNo=1
4) 2011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5) 민법 제9조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이고,[6]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를 받는 제도'이다.[7] 각 후견유형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 II-1〉 성년후견의 유형별 본인의 행위능력 및 후견인의 권한

종류	본인의 행위능력	후견인의 권한
성년후견	- 본인의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없음.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제2항),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같은 조 제 4항)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포괄적인 대리권 - 가정법원은 위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938조 제2,3항).신상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우선함.
한정후견	-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음 -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됨(민법 제13조).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	-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권, 취소권과 대리권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 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신상에 관하여는 성년후견과 동일
특정후견	-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	- 가정법원의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여 대리권 가짐(민법 제959조의 11)
임의후견	-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 현재는 문제가 없는 일반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계약을 체결	- 계약에 따른 내용

6) 민법 제12조
7) 민법 제14조의2

2) 후견(감독) 사건의 현황과 추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에 따른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그 누적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말까지 총 127,990건에 이른다. 그러나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후견이 필요한 인원의 급증 추세에 비하면, 증가 추이는 느린 편이라 할 수 있다.

〈표 Ⅱ-2〉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건수 현황(2013~2023)

(단위: 건)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건수	1,833	5,371	7,524	8,459	10,888	13,060	14,534	16,154	16,742	16,495	16,880
증가건수	-	3,498	2,153	935	2,429	2,172	1,474	1620	588	-247	385

출처: 사법연감



[그림 Ⅱ-1]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건수 현황 추이(2013~2023)

출처 : 사법연감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는 총 126,107건으로, 그 중 후견 사건이 84,828건(67.3%)으로 가장 많고, 후견감독사건이 41,253건으로 32.7%를 차지한다.

〈표 Ⅱ-3〉 유형별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비율(2014~2023)

(단위: 건, %)

연도	총계	후견사건						후견감독						기타 후견 관련 사건
		성년후견					미성년	성년후견감독					미성년	
		소계	성년	한정	특정	임의		소계	성년	한정	특정	임의		
사건수	126,107	73,254 (100.0)	60,146 (82.1)	6,673 (9.1)	6,206 (8.5)	229 (0.3)	11,574	34,338 (100.0)	27,143 (79.0)	2,838 (8.3)	4,325 (12.6)	32 (0.1)	6915	26
증가건수	100.0	58.1	47.7	5.3	4.9	0.2	9.2	27.2	21.5	2.3	3.4	0.0	5.5	0.0

출처: 사법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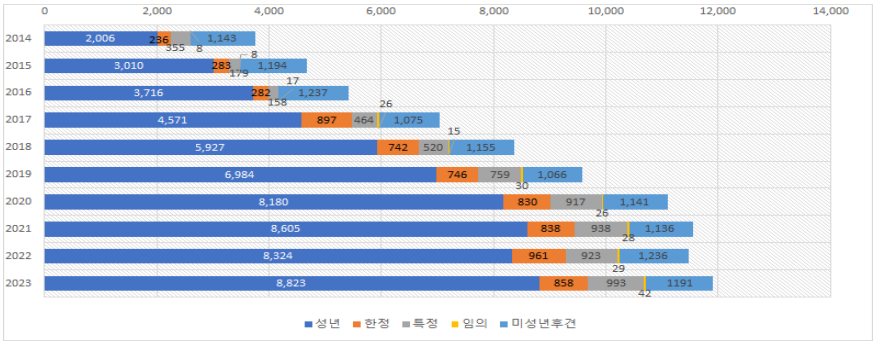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후견(감독) 사건은 2014년 5,371건에서 2023년 16,880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임의후견(감독) 사건의 접수 건수는 2014년 9건에서 2023년 48건으로 다른 후견 유형에 비해 이용이 저조하다.

〈표 Ⅱ-4〉 연도별 후견(감독)사건의 접수 건수 누계(2014~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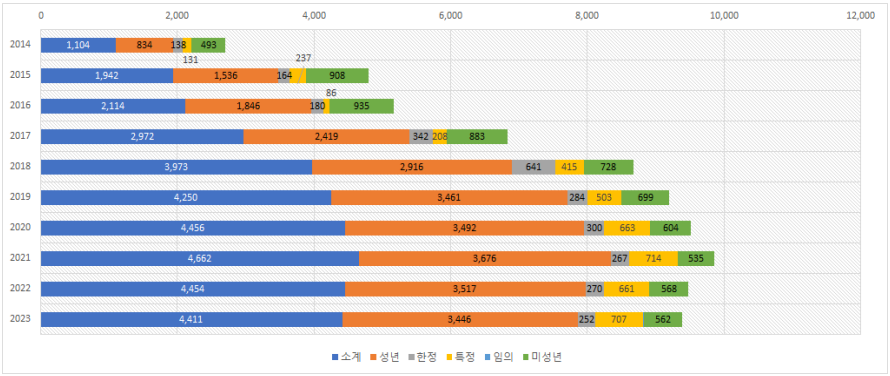
(단위: 건)

연도	총계	후견사건						후견감독						기타 후견 관련 사건
		성년후견					미성년	성년후견감독					미성년	
		소계	성년	한정	특정	임의		소계	성년	한정	특정	임의		
합계	126,107	73,254	60,146	6,673	6,206	229	11,574	34,338	27,143	2,838	4,325	32	6,915	26
2014	5,371	2,605	2,006	236	355	8	1,143	1,104	834	138	131	1	493	26
2015	7,524	3,480	3,010	283	179	8	1,194	1,942	1,536	164	237	5	908	-
2016	8,459	4,173	3,716	282	158	17	1,237	2,114	1,846	180	86	2	935	-
2017	10,888	5,958	4,571	897	464	26	1,075	2,972	2,419	342	208	3	883	-
2018	13,060	7,204	5,927	742	520	15	1,155	3,973	2,916	641	415	1	728	-
2019	14,534	8,519	6,984	746	759	30	1,066	4,250	3,461	284	503	2	699	-
2020	16,154	9,953	8,180	830	917	26	1,141	4,456	3,492	300	663	1	604	-
2021	16,742	10,409	8,605	838	938	28	1,136	4,662	3,676	267	714	5	535	-
2022	16,495	10,237	8,324	961	923	29	1,236	4,454	3,517	270	661	6	568	-
2023	16,880	10,716	8,823	858	993	42	1191	4,411	3,446	252	707	6	562	-

출처: 사법연감



[그림 Ⅱ-2] 연도별 후견사건 누계



[그림 Ⅱ-3] 연도별 후견감독 사건 누계

3) 공공후견

공공후견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후견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하여 국가가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양성, 후견인 매칭, 후견감독 등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박인환, 2021).

현재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각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Ⅱ-5〉 대상자별 공공후견제도의 법률적 근거

종류	법률조항	내용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질환자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9조, 제959조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4조의2(특정후견개시의 심판), 제929조(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치매노인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종류	법률조항	내용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치매환자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 · 법인 · 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후견인의 유형과 각 유형별 선임현황

성년후견의 후견인은 친족후견인, 전문가후견인, 공공후견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친족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가족 또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갖는 정서적 유대나 친밀감을 통해 사건본인의 신뢰를 얻기 용이하다. 또한 피후견인의 특성이나 현재 상황을 토대로 본인의 욕구나 희망에 대한 이해도 높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지원과 대행이 용이하고, 특히 무보수의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2019년 성년후견 정책토론회 자료).

전문가후견인은 통상 친족후견인이 아닌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및 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후견인이나 후견인 후보자가 된 사람을 의미한다. 가정법원에서 선임되는 전문가후견인의 직업은 변호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법무사, 사회복지사 순이다(김성우, 2018). 전문가후견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하며, 피후견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 친족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일반적 실무 경향이다(김성우, 2018).

공공후견인은 후견비용 부담을 기준으로 한 분류로 전문가후견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전문자격 없이 후견인 교육을 받고 나서 활동하기도 한다(제철웅, 최윤영, 유혜인, 2016). 이에 따라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공후견인은 참여 동기가 다양한 반면, 후견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피후견인이 전문적이고, 균일한 후견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후견사건들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는 사법연감에는 성년후견의 유형별 접수건수와 처리 건수에 대한 통계치는 공개되어 있으나 후견인 유형별 통계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지은(2020)은 서울가정법원의 2013~2019년까지의 후견인 유형별 선임 현황을 표 Ⅲ-6과 같이 정리하였다.[8] 이 자료에 따르면 성년후견 유형과 한정후견 유형에서는 친족후견인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특정후견에서는 기타 유형의 후견인, 즉 공공후견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공공후견인이 주로 특정후견인으로 선임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Ⅱ-6〉 서울가정법원의 유형별 선임 후견인 변화

(단위: 건)

구분	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성년후견	친족후견인	434	1131	1542	512	640	749	741
	전문후견인	20	45	48	46	56	50	27
	기타	6	18	23	12	14	14	2
한정후견	친족후견인	59	138	182	55	51	92	49
	전문후견인	3	7	7	8	16	14	9
	기타	0	4	3	4	14	2	3
특정후견	친족후견인	8	125	114	10	11	26	20
	전문후견인	5	22	20	0	4	4	7
	기타	27	198	224	16	50	52	62
임의후견	친족후견인	0	1	1	0	1	1	1
	전문후견인	0	0	0	0	0	0	0
	기타	1	1	2	1	1	0	0

출처: 이지은(2020)

8) 이 자료에 따르면 기타 유형의 후견인은 주로 공공후견인이라고 함

한편 민법에서는 법인 또한 후견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930조 제3항, 민법 제959조의3 제2항, 민법 제959조의9 제2항). 하지만 법인후견인의 요건이나 기준에 대해 달리 규정이 없고 후견인의 결격사유(민법 제937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만 규정하므로 성년후견인이 될 법인의 자격에 관해 법률상의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볼 수 있다(이지은, 2020).

'법인후견'은 법인이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이며, 법인 또는 소속직원이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후견법인'이라 하였다(제철웅 외, 2015). 법인후견은 자연인후견인에 비하여 장기간의 안정적인 후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조직을 바탕으로 숙련되고 체계적인 후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지은, 2020).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법무법인, 사회복지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한 목적의 법인이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어 활동 중이다(이지은, 2020).[9)]

현재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중 일부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운영 현황

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개요

과거에 운영되었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는 개인별 특성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만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의사결정지원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장애인과 노인 복지 분야에서 성년후견추진연대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이명박 정부 공약사항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선정하고 2011년에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시범운영되었다.

9) 2020.3.13.기준으로 총 20개의 비영리법인이 법인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어 있음. 법무법인이 6곳, 법무법인에서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사회복지사 중심의 사단법인, 법무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등이 10곳, 사회복지법인이 3개, 회계법인이 1개임(서울가정법원 통계자료(비공개), 2020; 이지은, 2020 재인용).

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목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성년후견제 이용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3.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 후보자로 하여 그 사람 또는 법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의 자격 및 추천 절차, 후견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개요

〈표 II-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목표물량	- 후견심판청구 : 600건, 공공후견인 활동 : 1,563명	
사업대상	후견심판 청구지원	- 성인(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공공후견인 활동지원	- 법원에서 선임된 공공후견인(피후견인의 가족(민법 제779조)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비용 미지원)

<table>
<tr><th>구 분</th><th>주 요 내 용</th></tr>
<tr><td>지원금액</td><td>- 후견심판청구 :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함
※ 특정후견 개시 후 공공후견인이 청구인이 되는 사건(후견인사임청구 등), 각종 변경청구, 사전처분 등 발생비용
※ 법률자문(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수당지급 기준
<table>
<tr><th>자문 내용</th><th>기준 금액</th></tr>
<tr><td>후견심판청구관련 서면 작성</td><td>각 건당 300천원 이내</td></tr>
<tr><td>후견심판청구사건의 대리</td><td>각 건당 500천원 이내</td></tr>
</table>
· 후견심판청구 관련 서면 작성 자문료(이하 '서면 작성 자문료')는 후견심판개시, 후견인 변경 등 민법에 의한 후견관련 사건 일체 포함하며, 각 사건 유선자문,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의한 보정서도 포함
· 지급일: 사건 인용일로부터 3주 이내 해당사건 심판문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제출하여 지급(단, 예산 교부 등 사정에 따라 조정 지급 가능)
- 공공후견인 활동 : 월 20만원(월 최대 60만원)
※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 1명의 후견인이 다수의 피후견인을 후견할 경우 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는 후견법인 간 논의하여 지급(단, 지급금액은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td></tr>
<tr><td>공공후견인 자격</td><td>- 지정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후견법인으로, 피후견인과의 관계 및 공공후견인 활동 적합성 고려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 추천하는 자(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근거)</td></tr>
<tr><td>선정방식</td><td>- 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시·군·구에서 후견필요성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공공후견법인은 지역사회에서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협조해야 함</td></tr>
<tr><td>후견 유형</td><td>-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td></tr>
<tr><td>공공후견인 감독관리</td><td>- 후견인 정기보고서 점검(매월 제출, 후견인 또는 후견법인을 통해서 수령)
- 시·군·구가 후견인의 감독 관리 업무 시, 후견법인과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협조를 구하여 지도·점검 가능</td></tr>
</table>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추진주체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공후견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후견법인이 있긴 하지만 법인 차원의 후견보다는 개인의 공공후견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표 Ⅱ-8〉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추진체계별 기능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사업 총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지침 시달 – 예산 지원 및 사업 평가, 관리·감독
시·도	사업계획 수립	• 광역단위 사업 조정 – 매칭 비율에 맞도록 지방비 확보(사업 확대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하여 물량을 늘릴 수 있음) –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비 보조 – 심판절차비 및 후견인 활동 보조금 교부(시·도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공공후견법인)
시·군·구	사업 시행	• 사업 시행 – 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후견법인 관리·감독(지도·점검 실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업지원 보조금 집행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사업 지원 및 자문 – 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추천 – 심판청구서 및 제출 서류 점검 지원 및 자문 – 심판청구 지원 또는 심판과정에서의 대응 조언 –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심판절차비용 지출 관리 – 공공후견법인 후견인활동비 교부 – 심판청구, 후견활동지원 사항 모니터링 실적 취합, 보고 등
공공후견 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 공공후견인 후보자 모집 및 교육 등 관리 – 공공후견인 활동개시 오리엔테이션, 신규·보수교육, 자조모임 지원 등 후견인(후보자 포함)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및 후견인활동비 지출 관리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 심판청구서 작성 • 활동 후견인 및 피후견인 지원 – 제3자 후견인 및 피후견인 모니터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에서 본인이나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 또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 시군구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통지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공공후견법인으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공공후견법인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시군구로 후보자로 추천하면 시군구에서는 후견인후보자를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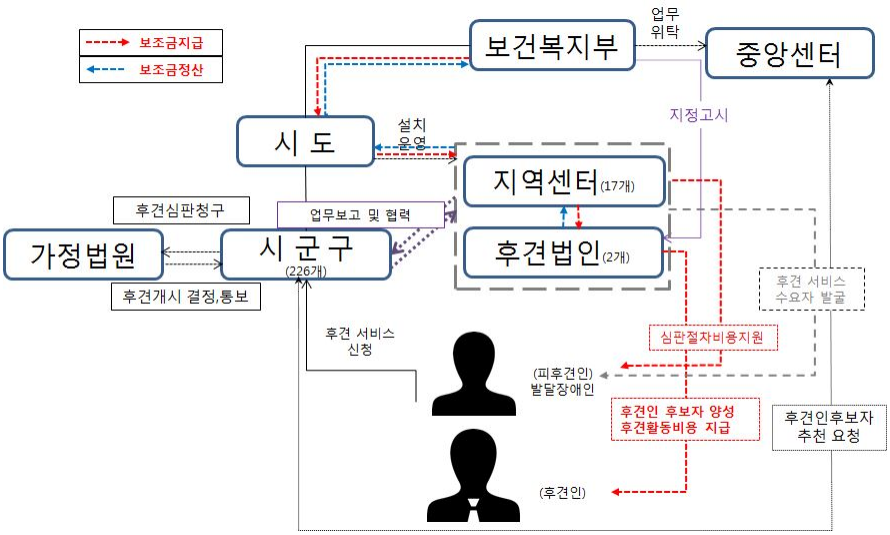
발달장애인지원 공공후견사업에서 후견심판청구는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가 있는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변호사가 지자체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후견심판청구 가능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아 심판청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은 현재 2개 법인[10]이 전국의 관할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표 Ⅱ-10〉 참고). 2024년 말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수는 총 226개소이고, 여기에 기초자치단체 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서귀포시를 포함하면 총 229개 행정구역으로 전국 전 지역을 포괄하는 구조이다. 각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인 후보자 교육 및 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된 공공후견인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다. 공공후견법인이 직접 후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으며, 사회조사보고서 및 공공후견심판청구서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에서 공공후견법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0) 지정기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표 Ⅱ-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내용
후견인 모집	후견인 모집, 교육실시 등
후견인후보자 추천	후보자 명부 작성, 지자체 제공
후견인 활동 지원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일차적 관리, 활동지원
네트워크 구축	후견수요 발굴을 위한 가정법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과 네트워크 구축
공공후견제도 홍보	발달장애인 및 가족, 금융기관 등 대상 공공후견제도 홍보
후견업무 수행	법원에서 공공후견법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된 경우 후견업무 수행
후견심판 청구 지원	사회조사보고서 및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후견 관련 집행 관리	후견심판청구비 및 후견인 활동비 집행관리
후견서비스 제공	후견법인이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지자체와의 협조 구축	간담회 등



[그림 Ⅱ-4]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지원 체계도

〈표 Ⅱ-10〉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관할 지역

구분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전체	103	126
서울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12)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13)
부산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8)	기장군, 남구, 금정구, 동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8)
대구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4)	중구, 동구, 수성구, 북구(4)
인천	강화군,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5)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5)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5)
대전	중구, 서구, 유성구(3)	대덕구, 동구(2)
울산	-	남구, 중구, 북구, 동구, 울주군(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1)	-
경기	양평군, 수원시, 광주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성시, 의왕시, 화성시, 성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양시, 여주시, 군포시, 양주시, 오산시, 의정부시(17)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고양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14)
강원	동해시, 횡성군, 원주시,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태백시, 강릉시, 삼척시(9)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홍천군(9)
충북	청주시(서원구, 흥덕구) 충주시,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6)	청주시(상당구, 청원구),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6)
충남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홍성군(6)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공주시, 예산군, 서천군, 보령시(9)
전북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8)	익산시,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6)
전남	목포시, 여수시, 나주시, 해남군(4)	순천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18)
경북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시, 예천군(10)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12)
경남	창원시,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하동군, 산청군, 창녕군, 합천군, 의령군(9)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고성군, 거제시, 통영시, 함안군, 함양군, 거창군(9)
제주	제주시(1)	서귀포시(1)

출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공무원 매뉴얼(2023)

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운영 현황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2024년 기준으로 피후견인 현황은 총 1,545명이다. 이는 발달장애인 전체 280,672명 중 0.55%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매우 적다. 피후견인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이용 지역을 살펴보면, 경남이 1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91명), 부산(145명), 광주(126명), 경기(116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후견인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23명)이었으며, 울산(28명), 대전(35명) 순으로 적었다.

〈표 II-11〉 2024년말 기준 지역별 피후견인 현황(피후견인 기준 지역)

(단위: 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91	145	62	60	126	35	28	23	116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00	81	78	96	88	77	193	46	1,545

출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자료

다음으로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인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으로 1,760건으로 1인당 평균 1.13명이 매칭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제3자후견인(개인+법인)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3명까지 활동이 가능하므로, 매칭이 되지 않은 공공후견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후견인의 유형으로는 제3자후견인으로 활동하는 개인이 944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후견인(659명)이 많다. 개인후견인은 2020년에는 가족후견인에 비해 적었으나, 2021년부터 많아졌다.

〈표 II-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연도별 활동현황(최근 5년)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가족후견인, 제3자후견인의 합)		1,362	1,529	1,797	1,823	1,760
가족후견인		652	647	785	710	659
제3자후견인	개인	641	776	876	960	944
	법인	69	106	136	153	157

출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자료

심판청구는 5년 평균 735.2건이며, 2024년 기준으로 심판청구건수는 814건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건수 중 청구의 경우에는 후견 개시를 위한 청구가 가장 많으므로, 2024년 기준 373건(가족 70건, 제3자후견 303건)의 신규 후견인 등록이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II-13〉 연도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심판청구현황(최근 5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심판청구건수 계		710	751	711	690	814
가족	청구	214	169	115	73	70
	재청구	7	5	28	45	43
	사후조치	17	20	24	37	28
제3자 후견	청구	357	270	239	203	303
	재청구	42	210	206	210	262
	사후조치	73	77	99	122	108

출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자료

다음으로 최근 5년간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은 예산이 동결된 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 신청인원의 수용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Ⅱ-1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예산(국비 및 지방비의 합)

(단위: 천원)

구분	예산
2020	1,288,750
2021	1,475,000
2022	2,358,750
2023	3,841,910
2024	3,841,910

출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자료

실제 2024년 12월 말 기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신청 대기자[11]도 632건으로 달한다(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부자료). 그러나 신청 대기자는 센터에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대기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며, 각 후견법인은 후견인교육을 연 1회만 실시하고 있고, 후견인후보자 추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공후견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관련 선행연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단순히 민법 개정에 따른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의사결정능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제도화에 앞서 다양한 학문적 · 정책적 논의가 축적되었고, 현장 중심의 실천 모형 또한 함께 개발되면서 법률과 사회복지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공공정책으로서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 다양한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다음의 세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 도입 이전에 수행된 주요 연구들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적 전환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 실천 모델 개발 논의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다.

11) 신청 대기 건수는 청구서류준비 및 청구서 작성, 후견인후보자추천, 법원심리 중인 것으로 모두 포함함.

둘째,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실천적 쟁점들, 특히 후견법인의 자격, 역할, 운영 구조에 관한 비판적 논의와 함께, 후견인의 활동 범위와 권한이 실제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논의들을 검토한다.

셋째, 2025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도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아울러,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의 거점기관을 후견법인화하는 방안과 같은 가능성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제도 도입 이전에 수행된 주요 연구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본격화되기 이전, 특히 2013년 이전에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논의들이 선행되었다.[12] 이러한 논의들은 장애인이 삶의 전 영역에서 독립성과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Wehmeyer, 1996; Field & Hoffman, 1998), 인간 서비스에서의 정상화 원칙(Wolfensberger et al., 1972; Nirje, 1994), 그리고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앞서 법적 권리 보장과 제도적 대안의 필요성(민병로, 2007; 백승흠, 2011; 최현태, 2013)을 강조하였다.

이후에는 권리 보호 수단으로서 공공후견제도의 법적 정당성과 세계 각국의 사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3] 이러한 논의들은 후견주의와 자기결정권 간의 긴장 관계를 헌법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며(민병로, 2007),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개입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백승흠, 2011). 또한, 기존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제철웅, 2011). 후견심판 절차의 공정성 확보, 후견인의 자격 요건과 감독 체계에 대한 법제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김상묵 & 윤성호, 2013). 법정후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중심의 '사회적 후견' 개념이 대안으

12) 자기결정권에 대한 연구들은 국내외에서 장애인의 삶에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주요 논문은 Wolfensberger et al. (1972); Nirje (1994); Wehmeyer (1996); Martin & Marshall (1995); Field & Hoffman (1998); Malian & Nevin (2002); 김강운(2006); 백승흠(2011); 이복실·김용득(2012); 이복실(2013); 오혜경(2006); 민병로(2012); 최현태(2013) 등이 있다.

1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민병로(2007); 백승흠(2011); 제철웅(2011); 김상묵·윤성호(2013); 조승현(2013); 김성욱(2014); 박인환(2014; 2015; 2017); 김명엽(2015) 등이 있다.

로 논의되었으며(조승현, 2013), 현행 성년후견 관련 조항의 법적 타당성과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김성욱, 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근거하여, 후견의 패러다임을 의사결정 대행에서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박인환, 2014; 2015; 2017). 아울러 공공후견제도의 정책적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가의 공적 책임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서비스 체계 마련의 필요성 또한 강조되었다(김명엽, 2015).

세계 주요 국가들의 후견인제도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었다. 각국의 제도는 문화적 · 법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으며, 국내 연구자들은 이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 설계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기능 중심 무능력 개념'과 '최소 제한 원칙'을 중심으로 한 후견 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임의대리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공공후견 개념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이를 자율성 보장과 절차 적정성을 강조한 제도로 분석하였다(이덕환, 2000; 신권철, 2013; 전동일 외, 2013).

일본은 1999년 민법 개정을 통해 후견, 보좌, 보조로 구분되는 법정후견제도를 도입하였고, 동시에 임의후견과 시민후견인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후생노동성 주도의 시민후견추진사업을 통해 시민후견인의 양성, 조직 구성, 활동 지원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국내 학계는 이를 시민참여 기반의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오호철, 2007; 박상호, 2013; 전동일 외, 2012).

독일은 1990년 성년후견법 제정 이후, 1998년 개정법을 통해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 제도와 시민후견의 실비 보상 체계를 도입하였다. 후견단과 후견청 중심의 관리체계와 함께, 후견인의 직무범위와 피후견인의 의사존중 원칙이 법제화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이를 비용 절감형 개혁모델로 분석하였다(한봉희, 2000; 백승흠, 2013).

영국은 2005년 제정된 「정신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을 통해 '지원 중심'과 '최소 제한'이라는 후견의 원칙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은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하는 5대 원칙을 명시하고, 영속적 대리제도(LPA) 및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Deputy)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후견청의 감독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은 이를 권리 기반 접근과 제도적 통제 구조가 잘 결합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이명현, 2012; 제철웅·박주영, 2007; 이지민·제철웅, 2013).

2)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실천적 쟁점에 대한 연구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취지와 현장 운영 사이의 간극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질적 연구와 평가 기반의 비평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쟁점들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공후견이 특정후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 법원이 후견사무를 개별 사안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어, 후견인의 역할이 소극적으로 제한되며, 상황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는 후견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제철웅, 2017; 김나래, 2019; 김효정, 2020).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후견 중심의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후견 및 임의후견 등 보다 유연한 후견유형으로의 확대 적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김나래, 2019; 김효정, 2020; 제철웅, 2017).

둘째, 앞서 지적한 특정후견의 한정성으로 인해 후견인의 직무 범위와 권한이 실제로 매우 제한적이며, 역할 수행에 대한 이해 부족도 병존하고 있다. 후견인은 신상보호, 재산관리,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가 모호하거나 과도하게 협소하여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임소연 외, 2018; 이은정 외, 2018; 김효정, 2020). 특히 일부 후견인은 자신의 역할을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등, 후견활동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피후견인의 예측 가능한 삶의 유지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후견인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교육 체계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김정인, 2022; 홍윤정, 2021; 김미옥 외, 2019).

셋째, 후견법인의 자격, 지정 방식, 운영 구조에 대한 제도적 미비는 공공후견제도의 구조적 한계 중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후견법인이 실질적인 후견 운영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지위와 설립 요건, 감독 체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제철웅, 2016; 배광열, 2017; 송인규, 2017). 또한 지역 간 법인 역량의 불균형 문제

도 드러나고 있으며, 수도권 중심의 운영 구조와 지방의 서비스 공백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더불어 법인 운영자와 실무자 간의 전문성 차이, 후견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 후견사무에 대한 행정 대응의 어려움 등 실무적 한계 역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송영신, 2017; 최윤영, 2017; 배광열, 2017). 이러한 점에서 후견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균형을 고려한 후견법인 육성, 국가 차원의 지정 기준 정비 및 감독·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제철웅, 2016; 김나래, 2019).

3)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대안 및 가능성 있는 논의들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후견제도의 기능을 영역별로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산관리 영역에서는 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합리적인 지출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상 영역에서는 24시간 개별 돌봄과 주거를 통합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주목할 수 있다.

이 두 제도는 각각 금전관리와 신상보호라는 후견의 핵심 기능을 분담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된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후견인이 담당하던 재산관리 사무의 일부를 지원인과 지원기관이 분담함으로써,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아울러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전반을 포함한 신상결정 영역에서 상시적·밀착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후견의 신상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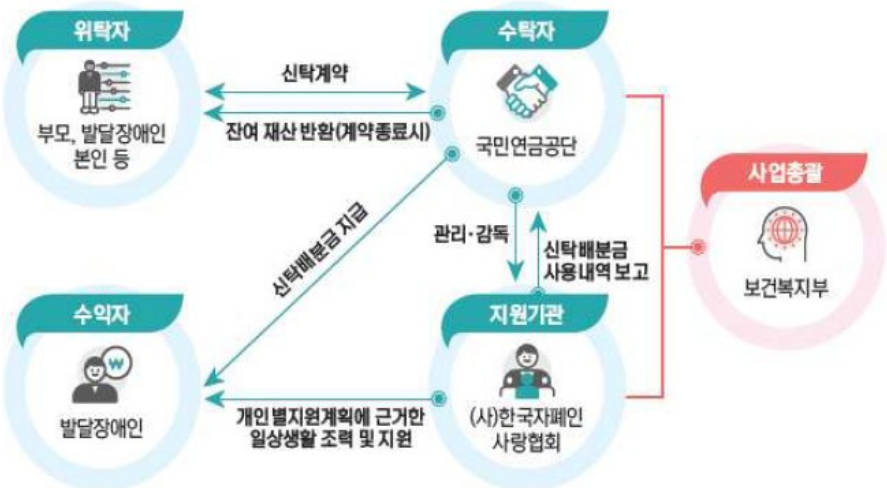
결국 공공후견의 보완 방향은 단일 제도의 확장이 아니라,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기능적 분화와 전문화를 통해 후견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및 강화를 모색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공공후견과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기능적 연계 방안

2022년부터 시범적으로 도입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공공후견제도의 재산관리 기능을 보완하거나 일정 부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소득, 상속, 증여 등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합리

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단순히 재산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 당사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고, 재정적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2023)의 연구에 따르면,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공공후견제도와 병행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특히 후견인이 담당하던 재산관리 사무의 일부를 지원인과 지원기관이 분담함으로써 후견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운영구조는 크게 세 주체로 구성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수탁자'로서 적합성 심사와 계약 체결, 신탁계좌 개설, 배분 승인 및 회계 정산을 담당하고, 위탁운영기관(예: 자폐인사랑협회 등)은 '지원기관'으로서 초기상담, 욕구조사, 재정지원계획 수립, 지원인 선임, 월별 집행 지원 및 정산 검토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인과 가족은 '위탁자·수익자'로서 계획 동의, 납입, 사용, 변경 요청 등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 세 주체가 협력하는 체계는 신탁계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원인은 이용인의 일상적인 소비와 재정활동을 돕는 실질적인 조력자로 기능한다.



[그림 II-5]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 지원 체계도

출처: 국민연금공단(2023)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정기적 생활비와 시설이용비, 직업훈련비 등의 정기배분과 긴급지출 또는 예외지출을 처리하는 수시배분으로 구분된다.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은 지원기관의 승인을 거쳐 신속히 처리할 수 있으며, 고액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시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구조는 기존 공공후견에서 나타났던 '지출 승인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본 제도는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월별 정산서 제출과 증빙 편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원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오류나 과다 지출을 시정한다. 모든 과정은 이용인 중심의 원칙 아래 진행되며, 쉬운 정보 제공과 대체의사소통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가족이 지원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반복 위반 시 지원인 선임이 철회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공공후견의 재산관리 사무를 투명한 회계 절차와 신속한 집행 체계로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즉, 후견인이 수행하던 재산관리 업무 중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지출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통해 처리하고, 고위험 법률행위나 장기 계약 등은 기존 후견제도를 통해 수행하는 기능 분담형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계좌관리인제도와 대리수령인제도를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체계로 통합·체계화하여 개인별지원계획 내에서 일관되게 관리한다면, 제도 간의 중복과 충돌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II-15〉 발달장애인 금전관리 제도 비교

구분	계좌관리인제도	대리수령인제도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법적 근거	발달장애인법」 제21조, 시행령 제13조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	국민연금공단 내부사업(「발달장애인법」 제21조 근거 시범사업)
운영주체	시·군·구장 승인 하에 개인(보호자·후견인 등) 지정	복지급여 지급기관(지자체) 승인 하에 지정	국민연금공단(수탁자), 위탁운영기관, 지원인 3자 협력
관리대상 자산	발달장애인 명의의 은행계좌(급여·재산 일부)	공공급여금(활동지원비, 생계급여 등 한정)	현금·예금·상속금·급여 등 현금성 자산 전체
관리방식	제3자 명의의 출금·이체 대리(위임)	복지급여 수령 및 사용 대리	신탁계좌 개설·납입·배분·정산까지 통합 관리
감독체계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관리	지자체 사회복지 전산 확인	국민연금공단(위원회 심사, 회계감사) 및 위탁기관 현장점검
공공후견과의 관계	후견과 병행 가능하나 실질적 연계 미흡	후견의 재산관리 사무 일부 대체(급여 수령 한정)	후견의 재산관리 사무를 실질적으로 보완·대체 가능
법적 효력	위임계약(민법 제114조 준용) 수준	행정적 위임	신탁계약(공공신탁 형태)
한계점	대리인의 남용·횡령 위험, 사용용도 제한	범위가 복지급여로 한정	법제화 미비, 가족지원인 이해상충 위험

결국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신탁(공단)-계획 및 집행(지원기관)-의사결정(이용인 및 지원인)'의 삼자 협업 구조를 기반으로, 공공후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정관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쉽게 이해하면, 대리수령인제도는 복지급여 등 수입 단계의 관리, 계좌관리인제도는 예금의 지출 단계의 관리에 각각 초점을 두고 있다면, 재산관리지원서비스는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된 설명에 불과하며, 실제 운영에서는 세 제도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재산관리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발달장애인의 재산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최중증 24시간 개별 1:1 서비스기관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한 후견제도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

공공후견제도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의 활동이 일상생활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24시간 1:1 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후견제도의 통합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024년부터 시행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설계된 1:1 개별 지원 제도이다. 돌봄, 의사소통, 행동, 주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이용인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지원 강도와 생활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이 중 거주를 포함한 24시간 1:1 서비스는 공공후견사업의 일부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 거주를 포함한 24시간 1:1 서비스는 낮활동, 주거, 의료 등 일상 전반의 의사결정 지원이 하나의 연속된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최중증 이용인에게 단순한 일상생활 지원을 넘어, 상시적인 의사결정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삶과 자율적 선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그러나 후견인이나 가족이 이용인과 함께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결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24시간 1:1 서비스의 사업범위에 공공후견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은 실험적 제도 개선의 한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다. 제공기관이 법적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받을 경우, 돌봄·의료·재정·의사결정 지원을 일관된 체계로 통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적·행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며, 후견업무와의 회계 분리, 윤리심의, 외부감사 등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한 법적 대리를 넘어,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용인에게 지속적인 판단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돌봄과 후견을 연계한 새로운 공공후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통합돌봄의 목표가 '보호'에서 '권리 보장'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보건복지부, 2025; 김미옥·김새봄·유하얀, 2019; 김민진·김미옥, 2023).

전국 109개소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역 기반의 통합지원 거점으로서, 공공후견사업의 행정적 지원과 후견인의 활동을 조정·연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제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025).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보 제공, 상담, 역량강화, 휴식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례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위기 대응 및 서비스 연계가 공공후견사업의 지원 기능과 일부 중첩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공공후견사업은 법에 근거한 국가 사업인 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자체 조례와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도적 근거의 차이로 인해 두 체계 간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를 조정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공공후견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계하고자 한다면, 지자체별 조례를 정비하고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후견사무를 지원할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례관리와 후견사무의 연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025, pp. 24-29).

결국 두 기관은 각각 상이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으나, 이용인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향후 공공후견제도가 돌봄·사례관리 체계와 연계된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대리를 넘어 지속적 삶의 결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 후견'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국내 후견 관련 사업 운영 현황

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비자의입소 규정이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없는 비자의입소자의 퇴소 또는 계속 입소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의 목표는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이다.

그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사업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았고, 보건복지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2 공포, '26.1.3 시행)되면서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부터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시작 초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은 4개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이 지정되어 운영되었으나, 2023년부터 2개소로 축소되었다.[14)]

〈표 Ⅲ-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목표

구분	내용
자기결정권 보장	- 정신질환 치료 및 요양 환경을 일반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지원 -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치료과정에서의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편견 해소	-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
사회통합	-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에 기여

출처: 2024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안내

14) 현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은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과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2개 법인이 담당하고 있음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대상은 후견인을 통해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로, 초기에는 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후견 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로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후견의 유형은 원칙적으로 공공후견이 특정후견 지원이므로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역시 특정후견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지원도 가능하다.[15)]

〈표 Ⅲ-2〉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함(무연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포함) · 후견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공공후견법인 활동비 지원 :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원
공공후견법인	- ①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②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지정기간 : '23.1.1.-'24.12.31.
후견 유형	- 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지원 가능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청구인 : 지자체장) · 정기후견보고서 점검 · 후견사무보고서 점검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정기후견보고서 점검 (분기별 수령, 후견법인이 시·군·구에 직접 제출) - 후견감독 사무보고서 법원 제출 (후견 개시 이후 매 1년마다 작성)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은 공공후견법인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202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는 공공후견법인 지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5)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38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이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인 정신질환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를 위하여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는 조항이 추가됨

〈표 Ⅲ-3〉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함(무연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포함) · 후견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공공후견법인 활동비 지원 :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원

2023년 기준 2개 공공후견법인이 2개 기관으로 관할 지역을 구분하여 담당하고 있다. 공공후견법인은 요양시설에 있는 정신장애인 또는 요양시설에서 퇴소한 피후견인 486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후견심판청구는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청구하는 형태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사업 총괄 ·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시달 ·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지원 예산 집행 및 사업 평가 · 공공후견인(법인) 지정 · 후견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운영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업지침 제·개정 지원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법인 관리·감독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공공후견인(법인) 대상 교육
시·군·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담당	- 후견감독기관 ·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필요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 · 후견감독사무 수행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 정기보고서 점검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연 1회) 제출 · 피후견인 권익보호사항 확인

추 진 주 체		기 능
공공 후견인 (법인)	지정기관	- 공공후견인(법인) 활동(후견서비스 제공 등) · 후견담당자 모집 및 선발 · 후견담당자 기본·보수교육 · 후견담당자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연 2회)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보고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관계 기관	정신질환자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필요 서류 구비 등)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지원(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 - 공공후견법인 협력 · 공공후견법인 후견사무 협조

공공후견법인의 업무수행 개요는 다음과 같다.

① 후견 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임 통지

⇩

②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에게 활동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 교육 실시
- 후견담당자는 인권교육(연 4시간)을 이수
- 후견담당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 후견법인 등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를 대상으로 후견활동 실시 전 기본교육*(최소 30시간), 연간보수교육(연8시간) 실시

⇩

③ 공공후견인(법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서식15호](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충·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작성

⇩

④ 후견감독인에게 보고, 후견 활동 개시

⇩

⑤ 후견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위험이 발생하면 후견감독인(시·군·구)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

⇩

⑥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 · 보관하고 정기보고서를 분기별로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후견 활동과 관련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

⑦ 후견업무의 종료 → 종료보고서제출 → 후견 종료등기신청

[그림 Ⅲ-1]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의 업무수행 개요

후견인력의 모집과 선발, 후견 담당자 교육은 공공후견법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후견담당자(후견인력)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5〉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의 후견담당자 교육

구분	이수시간	교육내용
기본 교육	최초 30시간 이상	※ 최초 기본교육 실시 후 후견활동 (1개월 이내) - 후견제도의 이해와 실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 후견인권한과 책임(후견직무와 역할, 의사결정능력 확인방법과 지원방법 등) - 후견사건과 가정법원 (후견심판 절차,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등)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복지서비스 현황, 서비스 신청·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자원연계 등) - 기타 실무지식 (금융재산의 관리 등)
보수 교육	연간 8시간 이상	※ 후견활동 실시 후 매년 이수 - 후견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 후견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

출처: 2024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안내

2. 치매공공후견사업

1)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요

치매공공후견은 2017년 9월 치매관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동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조항이 신설되어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인의 선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매환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후견대상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중 의사결정을 대리해 줄 수 있는 법적 보호자인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소득수준이 낮은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치매공공후견은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후견활동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공후견인은 미성년자, 전과자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후견인 결격사유가 없

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시행규칙 제3조의3	
수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 지원	
사업대상	피후견인 (후견대상자)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이 없는 경우(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학대·방임·자기방임 개연성 등을 고려할 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공공후견인	- 미성년자, 전과자,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등「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받은 사람
지원비용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 후견심판청구비 등: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지원회의, 자문수당, 회의 다과비, 사회조사보고서(1건당 최대 10만원), 법원 인지송달료 등 후견심판청구를 위한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 지출 - 공공후견인 활동: 담당 피후견인 수에 따라 활동비 지급 (1인 담당시 월 20만원, 2인 담당시 월 30만원, 3인 담당시 월 40만원 지급) - 후견인후보자 양성교육: 필요시 광역지원단과 협의 후 교육비 지원 가능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교육비 지원(교통비 실비 지급) * 교육비 외 식비 및 숙박비 등에 대해 교육생 자부담 발생 시 지출내역별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 가능(광역지원단별 예산상황 등을 고려한 자체 규정 마련)
피후견인 발굴 (치매안심센터)	- 시·군·구(치매안심센터)에 이미 확보된 치매환자 정보, 독거어르신 정보, 지역 내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시설 및 병원 등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치매환자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 - 치매여부, 소득수준, 가족관계, 치매환자 주변 환경 등을 확인 후 후견지원회의를 거쳐 선정	
후견인 후보자 선발 및 교육 (광역지원단)	- (모집) 공고 등을 통한 공개모집,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후보자 추천 등 - (선발) 자체 선발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후견인후보자 최종 선정 *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 별 후견인후보자 선발 계획 및 기준에 따라 선정 - (교육) 광역지원단에서 선발한 후견인후보자에 대한 양성교육 및 활동 대기 중인 후견인후보자 역량 유지·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실시	

구 분	주 요 내 용
후견심판청구 지원 (중앙지원단)	- 후견심판청구 대리 및 법률자문 등 제공 ※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시도 및 관할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후견심판청구 지원계획을 수립한 시도 광역지원단에서는 자체 후견심판청구 지원 가능(필요시 중앙지원단과 후견심판청구 지원계획안 협의 진행) * 중앙지원단에 후견심판청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 보고 필수
후견 유형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하되, 한정후견도 제한적으로 인정 * (한정후견) 치매상태가 심하여 광범위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후견인 관리·감독 (치매안심센터)	- 후견인 활동 보고서 점검 - 후견인 결정 후 활동 개시한 이후부터 월 1회 이상 후견 사례회의 등 개최

2)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체계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추진체계별로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총괄은 보건복지부가 하고, 후견대상자 발굴은 치매안심센터, 후견인후보자 선발, 관리는 광역치매센터,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은 중앙치매센터가 지원하고 있다.[16] 사업 추진체계별 수행업무는 다음과 같다.

〈표 Ⅲ-7〉 사업추진체계

수행기관	수 행 업 무		
보건복지부	사업 총괄	-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 마련 및 예산 지원
시·도	광역단위 사업 조정 및 관리	-	- 광역치매센터/관할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리 총괄 - 지방비 확보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대상자 발굴	-	- 후견대상자 발굴·선정 - 후견심판청구 - 후견인 활동비 지급 - 후견 감독
광역지원단 (광역치매센터)	후견인후보자 선발·관리	-	-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인후보자 추천

16) 경기도 광역치매센터의 경우 경기도 자체의 지원으로 변호사를 두고 있어 광역치매센터에서 심판청구를 수행하고 있음.

수행기관	수 행 업 무		
			- 후견인후보자 지원 및 인력풀 관리 - 후견인후보자 및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등 교육 - 후견심판청구 지원 및 법률자문 (후견심판청구지원 계획 및 체계를 확립한 시·도 광역지원단만 해당) * 전문인력(변호사, 관계 전문가 등)을 두고 시도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심판청구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할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심판청구 업무 지원 가능. 단, 후견심판청구 진행 및 결과 등에 대해 중앙지원단에 사전·사후 보고 및 상호 협의 필수
중앙지원단 (중앙치매센터)	법률자문 및 후견사무 지원	-	- 후견심판 청구지원 및 법률자문 - 광역지원단·치매안심센터 지원 및 모니터링 - 후견업무 관리·감독 지원 - 후견인후보자 교육과정 지원

사업추진체계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추진과정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후견대상자 발굴 및 선정 :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각 시군구 치매안심센터는 후견대상자의 발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가 자체적으로 발굴하기도 하지만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나 요양병원,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에 후견대상자 발굴을 의뢰하거나 이웃이나 지인의 신청, 치매환자 본인 신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후견대상자가 정해졌다면 광역지원단(광역치매센터)에 후견인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광역지원단은 필요 후견인 수의 2배 이상 추천을 원칙으로 하여 추천한다. 후견인후보자 중에서 후견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후보자를 선정하고 광역지원단에 회신하며 이후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공공후견인 후보자 선발 및 추천 : 광역지원단

후견인후보자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것은 광역지원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광역지원단에서는 매년 후견인후보자 선발계획을 마련하여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공지하는데, 관할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지역별 후견인 수요,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

후견인후보자는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후보자와 피후견인을 1:1 매칭하여 후견인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최종 후견인후보자들은 양성교육을 수강해야 하고 광역지원단은 활동 대기 중인 후견인후보자의 역량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3) 후견심판청구: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중앙지원단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치매공공후견 심판청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이며,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은 지자체의 심판청구 대리 및 관련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후견심판청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한 경우 관할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의 후견심판청구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17]

후견심판청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하여 중앙지원단에 제출하고 중앙지원단은 전달받은 서류들을 토대로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심판청구를 지원한다.

(4) 후견감독: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활동보고서를 점검하거나,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후견감독은 치매안심센터가 맡고 있다. 후견인과의 사례회의 역시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다.

17)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후견심판 청구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3)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18)]

2023년 7월 기준 치매공공후견 서비스 이용자는 266명이고, 227명의 후견인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의 치매공공후견심판청구 접수 누적 건수는 466건이다. 연도별 후견심판청구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후견심판 청구 접수 건수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

〈표 Ⅲ-8〉 연도별 후견심판 청구 접수 건수

(단위: 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건수	11	90	99	89	92	85	466

2018년 시범사업의 시작부터 2023년 7월까지 치매공공후견 추진실적을 지역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경기가 각각 114건, 부산 70건, 대구 6건, 인천 14건, 광주 7건, 대전 18건, 울산 9건, 세종 9건, 강원 20건, 충북 19건, 충남 19건, 전북 5건, 전남 5건, 경북 16건, 경남 19건, 제주 2건으로 지역별 서비스 이용의 차이가 크다.

〈표 Ⅲ-9〉 지역별 후견심판 청구 접수 건수

(단위: 건)

연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건수	114	70	6	14	7	18	9	9	114	20	19	19	5	5	16	19	2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수행되는데 후견심판 청구를 한 치매안심센터는 158개소로 61.7%이었다. 청구 건수가 1건인 곳이 56개소였고, 청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곳은 6개소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역별 치매안심센터의 공공후견 관련 업무의 질적 수준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7월 기준 양성된 공공치매후견인 수는 전국에 1,244명이고, 수료 후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68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공공후견에 관한 교육만 수료하고, 실제 공공치매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 치매공공후견사업 현황 자료는 2023년 제2회 후견대회에서 중앙치매센터 최선영 변호사가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 소결

본 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살펴보았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공공후견사업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치매센터가 관할하는 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과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2개의 공공후견법인이 각각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공공후견법인에서 후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은 공공후견법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공공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또한 활동비는 월 20만원 수준으로 모두 동일한 반면, 상한액은 차이가 있다. 청구 건수는 발달장애인이 600건으로 가장 많으며, 예산도 약 38억원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개인후견인의 비율이 높고, 법인의 전문성에 대한 차이도 심층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

〈표 Ⅲ-10〉 대상별 공공후견 비교

구분	발달장애	정신장애	치매
근거	발달장애인법	정신건강복지법	치매관리법
대상	성인 발달장애인	성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무연고 치매환자
지원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치매센터
후견감독	지자체, 공공후견법인	지자체	지자체,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2개 공공후견법인 지정, 개인 공공후견인 위주	2개 공공후견법인 지정, 직접 지원	개인공공후견인 위주
후견인 양성교육	- 공공후견법인 주최, 30시간 - 사업안내에 교육 내용에 대한 지침이 있으나 공공후견법인이 자체적으로 구성 가능	- 법인직원 대상 교육실시	- 광역지원단에서 교육 - 약 20시간
후견유형	특정후견이 원칙		
활동비	피후견인 1인당 월20만원 (상한 50만원)	피후견인 1인당 20만원 (상한 60만원)	피후견인 1인당 월20만원 (상한 40만원)
예산	약 38억	약 11억	약 10억
건수	청구건수: 연간 814건 후견감독: 연간 1200건	청구건수: 공석발생 시 후견감독: 486명	청구건수: 92건 후견감독: 266건

Ⅳ 해외 공공후견 관련 유사 사업 운영 현황

1. 일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동산·예금 등의 재산관리, 개호 서비스 및 시설 입소와 관련된 계약을 성년후견인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성년후견제도는 크게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로 구분된다. 먼저 법정후견제도는 '후견(後見)', '보좌(保佐)', '보조(補助)' 3개로 구분되어, 당사자의 판단능력 정도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임의후견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판단능력이 있는 동안에, 향후 판단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지정한 임의후견인에게 일상생활 혹은 재산관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계약을 맺는 제도이다.

1) 시-중핵기관-사회복지협의회 간 전체상

일본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주재한 내각회의를 통해 2017년 3월 24일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중핵기관(中核機関)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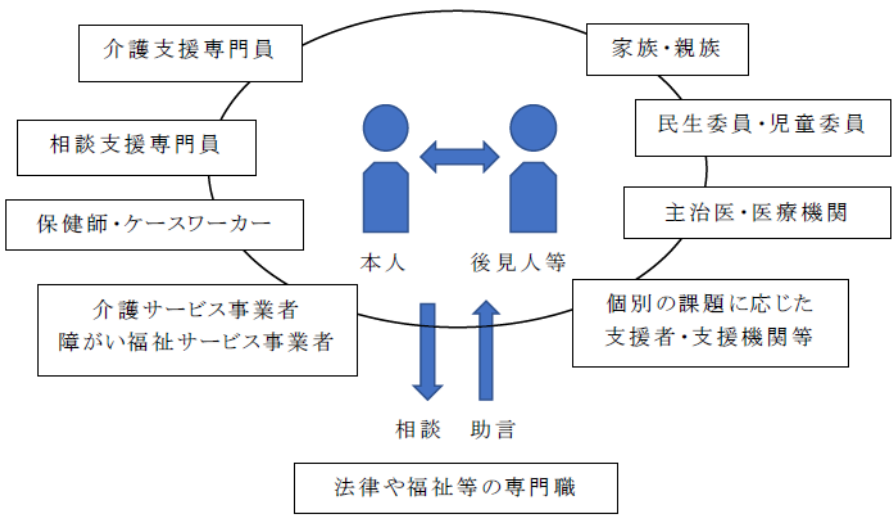
여기서 중핵기관(中核機関)이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 혹은 그 보호자가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지탱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지역연계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크게 세 가지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째, 권리옹호지원 및 성년후견제도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는 '사령탑 기능', 둘째, 지역에서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무국 기능', 셋째, 전문적인 조언을 위한 전문직 지원 확보를 위한 '진행관리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권리옹호와 관련된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지원을 연결하기 위해 지역에서 중심이 되어 전체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오오타시에서는 시(市)와 오오타시성년후견지원센터가 함께 중핵기관

을 운영함으로써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오오타시성년후견지원센터는 오오타시의 업무 위탁을 통해 지정된다.[19] 장애인 대상 상담은 지역복지과 장애인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래는 권리옹호가 필요한 사람을 협력하여 일상에서 지켜보고, 당사자의 의사 및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며 필요한 대응을 실시하기 위한 다학제적 팀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서비스이용자와 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구조로써, 대표적인 전문가로는 개호지원전문원, 상담지원전문원, 보건사·사례관리사, 개호서비스사업자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가족·친족, 민생위원·아동위원, 주치의·의료기관, 개별 과제에 대응하는 지원자 및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Ⅳ-1] 오오타시 시-중핵기관-사회복지협의회 전체상

권리옹호지원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 크게 홍보, 상담,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후견인 지원 기능과 같이 4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 오오타시(大田市). 「중핵기관에 대하여(中核機関について)」, 오오타시, https://www.city.oda.lg.jp/ohda_city/ (검색일: 2025.08.10).

〈표 Ⅳ-1〉 권리옹호 지원 네트워크 4가지 역할

기능	역할
홍보	- 전단지 제작 및 배포 - 소규모 강좌 실시 등 주지 계발
상담	- 케어매니저 및 지역포괄지원센터 직원 대상의 강의를 통한 상담 창구 대응 수준 향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 신청과 관련된 상담·지원 - 구민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후견인 지원	- 후견인 등 상담 대응 - 친족후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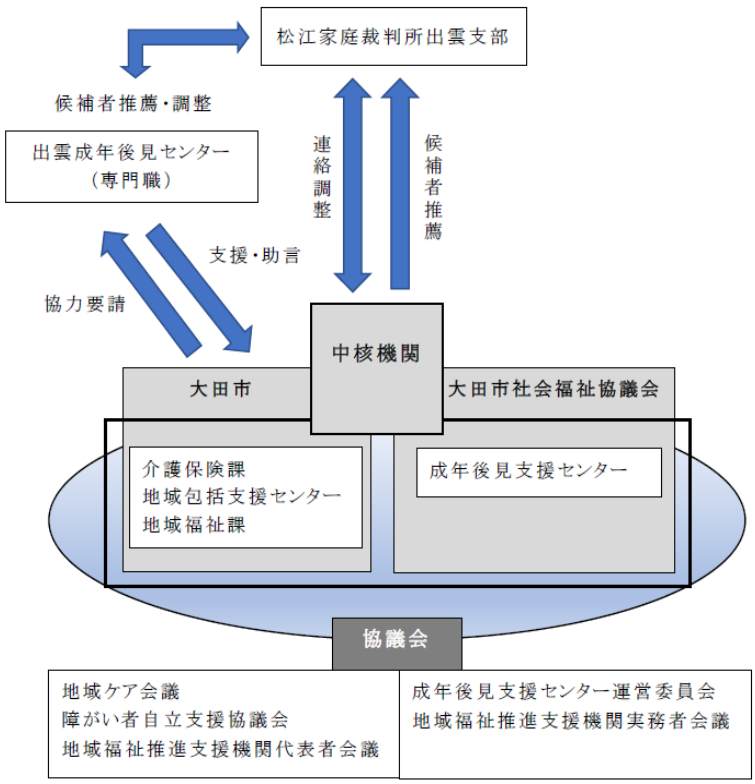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16개로 구분된 사업 중 하나로 '오오타시 성년후견지원센터 사업 경영'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Ⅳ-2〉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사업

연번	사업
1	-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기획 및 실시
2	-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원조
3	-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조사, 보급, 선전, 연락, 조정 및 조성
4	- 1~3 외에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5	- 보건의료, 교육, 기타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과의 연락
6	- 공동모금사업 협력
7	- 오오타시노인복지센터 경영
8	- 복지서비스 이용 원조 사업
9	- 자금대부사업
10	- 오오타시 성년후견지원센터 사업 경영
11	- 자립상담지원 사업
12	- 가계개선지원 사업
13	- 취업준비지원 사업
14	- 생활지원 체제 정비 사업
15	- 지역포괄지원센터 경영
16	-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출처: 일본 오오타시(大田市), 「中核機関とは」, 오오타시 공식 웹사이트 (검색일: 2025.08.10.)

오오타시, 중핵기관, 오오타시사회복지협의회 간의 전체적인 역할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Ⅳ-2] 전체상

출처: 일본 오오타시(大田市), 「中核機関とは」, 오오타시 공식 웹사이트 (검색일: 2025.08.10.)

2) 사회복지협의회(오오타시 기준)

(1) 오오타시 사회복지협의회 개요

사회복지법 제109조에 규정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정촌 단위로 설치되어 있다.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복지 마을 만들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후견 등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팀에 대해 법률·복지 전문직 단체 혹은 그와 관련된 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의 등을 활용하여 협의한다.

해당 조직은 지역주민, 사회복지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사회복지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이 참여하여 복지 마을 만들기를 추진한다. 주민 대표자가 이사회,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오오타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주민이 회원으로서 지원 및 협조를 하고 있다.

재원은 오오타시 및 시마네현 사회복지협의회의 보조금·위탁금 등, 주민의 회비나 공동모금을 통한 조성금, 기부금 등이다.

(2) 오오타시 시민후견인 양성교육

오오타시의 경우에는 시민후견인 양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약 9일간의 교육과정과 사례검토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다. 오오타시의 2025년도 시민후견인 양성강좌 커리큘럼 예정표는 다음과 같다.

〈표 Ⅳ-3〉 2025년도 오오타시 시민후견인 양성강좌 커리큘럼

날짜	내용	시간(분)	교육담당
① 6/14	개회식·오리엔테이션	10	사협
	알기 쉬운 성년후견제도(DVD)	50	사협
	Ⅰ 구제도(금치산제도)에서 새로운 제도(성년후견제도)로	90	변호사
	Ⅱ 인권과 성년후견		
	Ⅲ 성년후견제도개론		
	Ⅳ 법정후견제도	90	변호사
	Ⅴ 임의후견제도		
② 7/2	Ⅶ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시정촌의 책임	60	오오타시개호보험과
	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사업		
	Ⅺ 성년후견제도의 과제		
	제2장 시민후견개론	100	사협후견지원센터
	Ⅷ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50	사협생활지원과
③ 7/19	제3장 민법 등 법률 기초 Ⅰ 민법 가족법·재산법	180	변호사
	제1장 성년후견과 관련된 법률·제도 Ⅳ 건강보험 Ⅴ 공적연금제도	60	사회보험노무사

날짜	내용	시간(분)	교육담당
④ 8/23	Ⅱ 장애인 시책	90	오오타시 지역복지과 장애인복지계
	Ⅰ 고령자 시책	90	오오타시 개호보험과
	Ⅲ 생활보호	40	오오타시 지역복지과 보호계
	제2장 대상자 이해 Ⅰ 치매가 있는 어르신 Ⅱ 지적장애인	60	정신과 의사
⑤ 9/13	- 가정재판소의 역할 - 후견등기제도 - 후견 등 개시 심판의 흐름 - 후견지원신탁	90	가정재판소 서기관
	제2장 성년후견 실무 제4장 대인원조의 기초	60	사회복지사
	제1장 취임시의 실무, 세무	60	세무사
⑥ 10/11	취임 시 해야 할 것	90	사회복지사
	Ⅲ 재산목록작성	60	사회복지사
	Ⅳ 수지(收支)예정표 작성 Ⅴ 후견사무 방침	90	사법서사(司法書士)
	Ⅰ 성년후견실무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60	사회복지사
⑦ 11/8	Ⅱ 재산목록 작성	90	사회복지사
	Ⅳ 신상보호	90	사회복지사
	Ⅲ 재산관리 (시청수속, 법무국수속, 은행수속 등 실제를 포함함)	90	사법서사(司法書士)
⑧ 12/13	Ⅴ 보고 (출납부·후견기록 등 실무를 포함함)	90	사법서사(司法書士)
	소비자피해 대응	90	시마네현소비자센터
	Ⅲ 정신장애인 Ⅳ 기타 장애인	60	정신과 의사
(2026년) ⑨ 1/10	제3장 후견종류 시 실무 Ⅰ 후견종료 원인 Ⅱ 후견인 사임 수속 Ⅲ 본인 사망에 따른 후견종료 시 수속 Ⅳ 사후(死後) 사무 과제	180	행정서사(行政書士)
	오오타시 성년후견인재 뱅크 운영요강	20	행정서사(行政書士)
	제3장 시민후견활동의 실제	60	후견지원센터
	사례검토회	90	시민후견인
합계		2,330 (약 38.8시간)	

출처: 오오타시 성년후견지원센터(大田市成年後見支援センター), 「오오타시 성년후견지원센터」, 오오타시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웹사이트, (검색일: 2025.08.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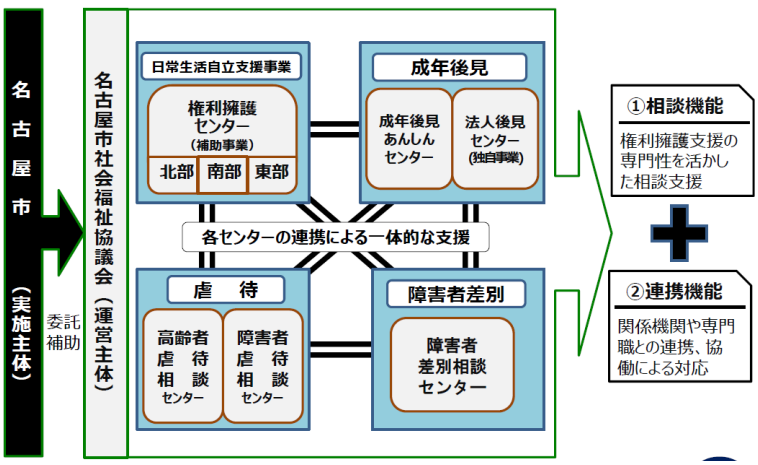
3)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 성년후견제도 실시 체제

나고야시 권리옹호 추진을 위한 실시주체는 나고야시로 위탁보조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이다. 크게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성년후견, 학대, 장애인차별 등 네 가지로 구분되어 각 영역과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는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 중 성년후견과 관련된 센터는 크게 두 가지로, 성년후견 안심센터와 자체사업인 법인후견센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영역별 센터에서는 권리옹호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활용하는 상담을 지원하고, 연계기관이나 전문직과의 협력을 통해 일체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

〈표 Ⅳ-4〉 권리옹호 영역별 센터 설치

영역	센터
일상생활자립지원사업	· 권리옹호센터(보조사업): 북부, 남부, 동부
성년후견	**· 성년후견 안심센터, 법인후견센터(자체사업)**
학대	· 고령자학대 상담센터, 장애인학대 상담센터
장애인차별	· 장애인자별상담센터



[그림 Ⅳ-3]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 권리옹호 추진 체제

20) 나고야시사회복지협의회 권리옹호추진부. 「名古屋市における市民（が主役 後見人活動」令和3 年 4 月 21 日（水）成年後見制度利用促進専門家会議地域連携ネットワークWG

나고야시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계획(2020년~2024년도) 5개년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과제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향후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과제로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촉진, 둘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원 충실, 셋째, 신상보호를 중시하는 지원체계 구축이다. 대응방안으로는 권리옹호지원 지역연계 네트워크 구축, 중핵기관 설치, 협의회 설치가 거론되었다.

이에 나고야시에서는 성년후견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성년후견안심센터 설치, 시민후견인 양성교육 개설, 법인후견센터 개설, 성년후견안심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중핵기관 수탁, 권리옹호지원협의회 설치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표 Ⅳ-5〉 나고야시 성년후견 관련 대처

연도	내용
2008	나고야시사협 제3자 후견 연구회 보고서를 발행
2010	- 나고야시가 센터의 수탁법인 모집 → 사협 응모·선정 - 나고야시 성년후견안심센터 개설 - 제1기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개최 (2010년~2018년도 전체 7회 개최, 수료자 186명)
2011	- 시민후견인(개인수임) 제1호 탄생(2021년 3월말 기준: 59사업수임, 뱅크등록자 107명)
2013	- (자체사업) 나고야시사협 법인후견센터 개설 (2021년 3월 말 기준: 76사업수임)
2020	- 나고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계획 책정 - 중핵기관 수탁 (성년후견안심센터 기능강화) - 권리옹호지원협의회 설치

(1) 중핵기관

중핵기관인 나고야시성년후견안심센터(중핵기관)의 사업은 크게 12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신청 지원, 둘째,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홍보 및 개발이다. 2020년 7월부터는 시민후견인뿐만 아니라 친족후견인 등의 활동 및 상담을 지원하며, 협의회 운영 등을 새롭게 시작하였다.

〈표 Ⅳ-6〉 나고야시 성년후견안심센터 사업내용

연번	사업
1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문 상담 및 신청 지원
2	성년후견제도 관련 홍보 및 계발
3	성년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사업
4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설치 및 운영
5	시민후견인 선임조정
6	시민후견인 후견 활동 지원 및 감독
7	시장 신청 사무
8	성년후견제도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9	법인후견지원 사업
10	친족후견인 등 활동지원 및 상담 대응
11	후견인 등 후보자 수임 조정
12	협의회 운영

성년후견안심센터에서 양성된 뱅크 등록자는 개인수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고야시 시민후견인은 주로 시장신청 후견 유형에 대응하여 수임하고 있으며, 친족신청은 2건의 실적이 있다. 시장신청에 따른 후견인 연계는 10% 미만으로, 매년 감소 추세이다. 시장신청 사안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민후견인이 수임하기에 적절한 사안을 수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시민후견인위원회에서 실시한다.

〈표 Ⅳ-7〉 시민후견인 수임에 적절한 사안

구분	내용
자산	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부채도 많지 않은 사람
주거	안정적인 주거(재택·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
생활	신변보호상 어려움이 없고, 지켜보기가 필요하거나 이러한 지원이 중심인 사람
친족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 분쟁 등이 없는 사람
지원체제	케어매니저 및 본인을 지원하는 인력이 있고, 주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람

①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등록기준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후에도 정기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친족 이외의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등록시점에 70세 이하여야 한다. 그 외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Ⅳ-8〉 나고야시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등록기준

연번	기준
1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료한다.
2	나고야시 장애인·고령자 권리옹호센터 생활원조인(生活援助員) 혹은 법인 후견센터의 법인후견지원인 활동을 일정시간 실시할 수 있다.
3	열의와 기초지식을 갖추고, 안정적·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및 환경에 있다.
4	뱅크등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	친족 이외의 임의후견 계약수임자 및 임의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친족 이외의 후견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7	등록시점 시 70세 이하이다.
8	민법847조에 규정된 후견인 등 결격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등록자 상황

가. 연도별 등록자 수

시민후견인으로 등록한 사람의 성별은 여성이 전체의 약 63.6%를 차지하며,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9〉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연도별 등록자 수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3기 (2012년)	제4기 (2014년)	제5기 (2015년)	제6기 (2017년)	제7기 (2018년)	합계
남성	6	3	6	5	7	10	2	39
여성	8	8	6	12	7	16	11	68
합계	14	11	12	17	14	26	13	107

나. 연령대별 등록자 수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에 등록된 사람의 평균 연령은 남성의 경우 66.5세, 여성의 경우 62.5세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78명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하며 고령이 될수록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10〉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연령대별 등록자 수

	평균연령(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남성	66.5	0	2	5	12	20	39
여성	62.5	1	6	15	28	18	68
합계	64.50	1	8	20	40	38	107

다. 주요 자격 보유 현황

시민후견인 107명을 기준으로, 보유 자격증별 중복 사항이 있다. 주로 개호와 관련된 종사자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도 존재하였다.

〈표 Ⅳ-11〉 시민후견인 후보자 주요 자격 보유 현황

자격증	보유자
사회복지사	8
개호지원전문인	7
개호복지사	16
홈헬퍼	21
보건사	2
간호사 등	4

라. 지역활동 및 복지활동 경력

시민후견인 107명을 기준으로, 경력별 중복 사항이 있다. 약 46.7%의 경우에는 지역활동 및 복지활동 경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 시민후견인 등록자는 첫째, 복지 관련 업무나 지역활동(민생위원(民生委員))을 수행해온 계층과 둘째, 이제까지 지역 혹은 복지 활동은 하지 않고 제2의 인생,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하는 계층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2〉 시민후견인의 지역활동·복지활동 경력

지역활동·복지활동	활동인원
자원활동	37
지역임원(地域の役員)	10
민생위원(民生委員)	12
생활원조인(生活援助員)	15
홈헬퍼(なごやかスタッフ)[21]	14
당사자지원단체	3
활동실적 없음	50

마. 직업 이력

시민후견인 107명을 기준으로, 직업 이력별 중복 사항이 있다. 가장 높은 비율은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62명)이며, 다음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18명), 복지시설 종사자(18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시민후견인 직업 이력

직업 이력	인원
복지시설	18
재택복지서비스사업소	12
복지상담기관	4
공무원·공공기관	35
자영업	1
민간기업	62
단체 직원	12
교육기관	11
이력 없음	0

21) 나고야카스탭: (공식사이트 다시 찾아봐야 함) 나고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재택복지사업 홈헬퍼 애칭

(2) 사회복지협의회

성년후견안심센터에서는 나고야시사회복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사안에 있어서 성년후견 감독자로서 위촉된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센터 직원과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시민후견인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성년후견안심센터는 시민후견인 대상으로 주요한 업무로써 감독 체계는 월 1회 보고, 3개월에 1회 통장 확인, 일상적인 금전관리 및 지원 경과 등을 양식에 따라 기록함으로써 관리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상담 및 지원 체계, 매뉴얼 작성, 사후관리 교육, 지원 상담, 각 기관과의 연계 시 조정 등을 위한 실무지원을 실시한다.

주로 시장신청 사안이 많고,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뱅크 등록자 107명, 총 선임건수는 종료 26건과 계속 33건을 합하여 59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임건수 59명 중에서 시장신청 55명, 친족 신청 2명, 법인 연계 수임 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후견인은 치매 어르신의 비율이 전체의 약 71.2%로 가장 높았고,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27.1%),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3.4%)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Ⅳ-14〉 시민후견인 수임 현황

피후견인 현황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전체 인원
수임연도	남	여	남	여	남	여	
2011	0	2	0	0	0	0	2
2012	2	3	1	0	0	0	6
2013	2	2	4	2	0	0	10
2014	3	7	1	3	0	0	14
2015	0	3	0	0	0	0	3
2016	5	0	1	2	0	0	8
2017	0	2	0	1	0	0	3

피후견인 현황	치매		지적장애		정신장애		전체 인원
수임연도	남	여	남	여	남	여	
2018	2	1	1	0	0	1	5
2019-20	2	1	0	0	0	0	3
2021	1	4	0	0	0	0	5
전체 인원	17	25	8	8	0	1	59 (이 중 26명 종료)
	42(이 중 22명 종료)		16(이 중 4명 종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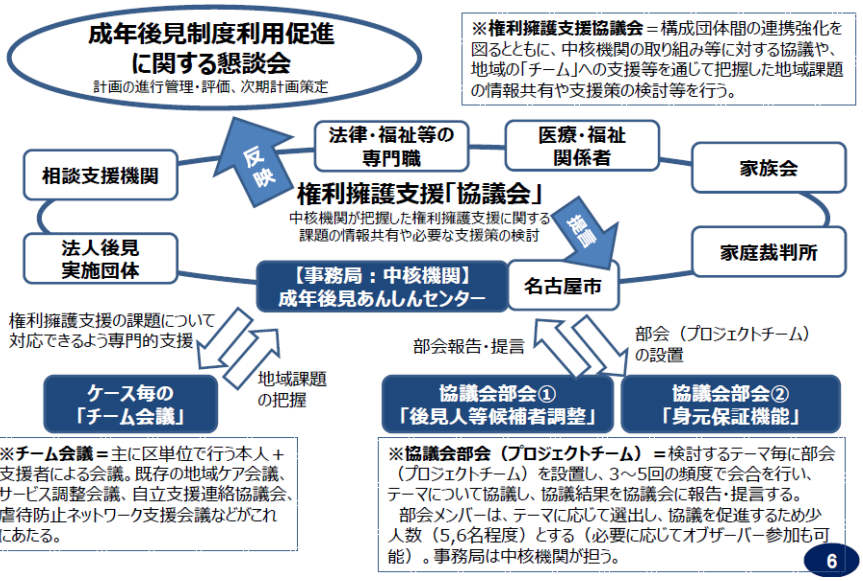
협의회에서는 시민후견인을 '친족 이외의 제3자 성년후견인 등으로 가정법원에서 선임된 시민(개인)'으로 간주한다. 시민후견인 및 감독자는 모두 별도의 보수는 없다. 시민후견인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교통비·통신비 등 실비는 피후견인에게 청구한다. 시민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주 1회 면회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민후견인은 감독자인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 및 보고를 하고, 협의회는 시민후견인을 대상으로 지원 및 감독을 실시한다.

② 법인후견 지원인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법인후견센터는 시민후견인 뱅크 등록자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나고야시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으로써 후견인을 수임한다. 양성교육을 수료한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 등록자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주로 법인후견 지원인으로서 당사자 면회 등을 담당하며, 월 1~2회 정도 당사자 면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센터 담당자와 공유하고, 생활비를 전달하며, 우편물 확인 등을 담당한다. 월 1회 보고, 3개월에 1회 통장 확인을 통해 센터 담당자에게 정기적인 보고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례회의에 참여하기도 한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수임선임건수는 종료 26건과 계속 50건을 합한 76건에 해당한다.



[그림 Ⅳ-4]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위한 사회복지협의회의 위치 및 역할

4) 법인후견인 및 시민후견인 활동의 실제

(1) 히가시히로시마시 법인후견인 활동 소개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히로시마 가정법원 조사결과, 임의후견 59명, 법정후견 5,669명 총 5,728명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치매가 있는 노인이나 친족이 없어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는 사람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팀에 의한 권리 옹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히가시히로시마사회복지협의회(이하 히가시히로시마시사협)는 2012년 4월부터 법인후견사업을 시작했다. 복지서비스 이용지원사업은 판단능력이 더욱 저하되어 지원이 어려워져 복지서비스 계약이나 시설 입퇴소 계약 절차 등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사람이 증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원내용은 지원이 필요한 사람(피후견인)에게 히가시히로시마시 사협직원과 법인 후견지원인[22]을 후견인으로 연계하여 개호, 의료, 복지서비스 등의 수속과 예·

22) 법인 후견 업무에서 사협 직원과 함께 본인(성년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사람

적금 및 재산 관리 등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업 개시 당시 지원건수는 1건이었으나, 2023년 10월 말 현재 53건으로 증가하여 매일 지원하고 있다.

① 법인후견인 및 피후견인 개요

지적장애가 있는 사사다 요시코(가명)씨는 스스로 금전관리 등을 하는 것이 어려워 동거하는 어머니가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신청하고, 사사다 씨의 후견인을 히가시히로시마시사협이 법인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사협직원과 법인후견지원원이 후견인으로서 주 1회 사사다 씨의 자택을 방문하여 사사다 씨의 예적금에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등 1시간 정도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처음에는 사사다 씨와 후견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웠지만,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사사다 씨가 '좋아하는 굿즈를 사고 싶고, 동물원에 판다를 보러 가고 싶다'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사사다 씨가 계획적으로 돈을 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명해주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물건 구매와 동물원 방문을 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23)]

〈표 Ⅳ-15〉 피후견인(사사다 요리코 씨) 개요

구분	활동 사례
당사자 개요	- 50대 (지적장애인) - 치매가 있는 어머니와 동거 중 (독거 경험 없음) - 어머니는 사협이 후견인을 담당함 - 취업 (장애인고용) - 주 5일 히가시히로시마시 내에서 근무함 - 관계자 (상담기관, 취업지원기관)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 수입이 생기면 짧은 시일 내에 전부 사용함 - 수입 및 지출 관리가 어려움 - 계약 등 필요한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움 - 처음 경험해보는 것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림 - 청소 및 식사에 관한 고집 및 집착이 강하고 일부 지원이 필요함

23) 일본 히로시마현사회복지협의회, 「福祉ひろしま 2024年1月号 (권리옹호과 개정판) 」, 히로시마복지정보넷, https://www.hiroshima-fukushi.net/fukushi-wp/wp-content/uploads/2024/01/福祉ひろしま-2024年1月号_権利擁護課-訂正版.pdf (검색일: 2025.08.10).

② 법인후견인 활동

히가시히로시마시사협에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후견인의 개인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치매가 있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지역사회 내 연계기관과 꾸준한 사례회의를 통해 피후견인을 지원하였다.

〈표 Ⅳ-16〉 법인후견 활동 내역

구분	활동 사례
정서지원	- 사사다 씨는 어머니의 시설 입소로 인해 정신적 불안이 심해져 일을 쉬는 일이 잦아졌다. - 시설에 입소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자들끼리 의논하여 방문간호사가 동행하여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면회할 수 있도록 했다. -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히가시히로시마시사협은 후견인으로서 장례식을 준비하여 사사다 씨와 어머니를 배웅할 수 있었다.
욕구파악	- 처음 만났을 때의 굿즈를 사고 싶다, 동물원에 팬더를 보러 가고 싶다는 사사다 씨의 목표를 다시 한 번 전문가들 간에 공유하며 앞으로의 지원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연계기관과의 협력	-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위해 상담지원사업소 및 사례관리사와 함께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 혼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방문간호 서비스 등 새로운 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사사다 씨를 지원한 지 약 10년. 사사다 씨는 지병의 영향으로 컨디션의 변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상황에 맞춰 후견인, 상담지원사업소, 취업지속지원B형사업소, 방문간호 등 많은 전문직이 지원자로 참여하고 있다. - 관계자들의 사례회의에서는 지원 상황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사다 씨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호기심과 기력이 저하되는 등 변화된 모습도 공유하고 있다.

실무자인 사협 지역복지과에서 근무하는 마츠모토 사토에 주임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데 있어 후견인 한 명만으로는 피후견인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다학제팀을 구성하여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피후견인을 지원함으로써 상당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고, 향후에도 당사자가 원하는 삶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은 특히 법인후견인과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가 사례회의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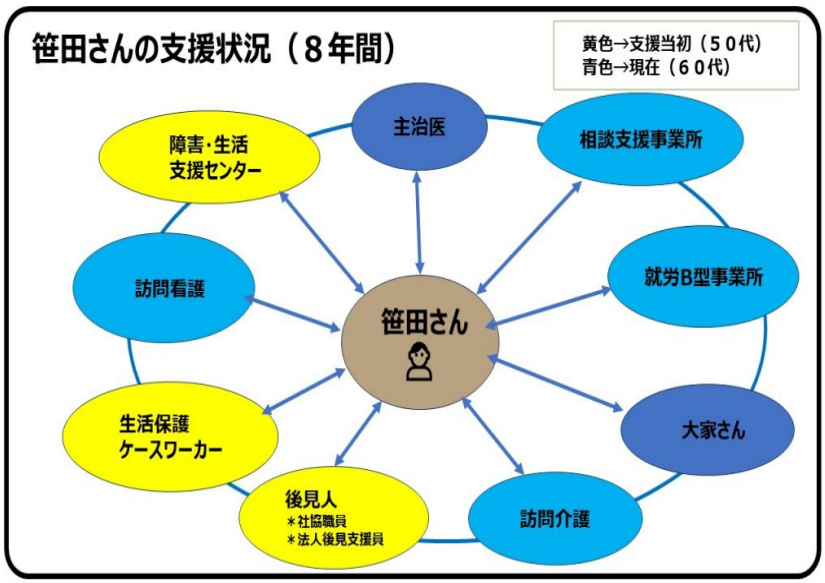
24) 히로시마현사회복지협의회(広島県社会福祉協議会), 「福祉ひろしま 2024年1月号 (권리옹호과 개정판) 」, 히로

(2) 나고야시 시민후견인 활동 소개

① 시민후견인 및 피후견인 개요

2010년 11월에 제1기 시민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수강하고 시민후견인 후보자 뱅크에 등록하였으며, 이후 2015년에 성년후견인으로서 수임할 수 있었던 O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개인수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O씨의 피후견인 A씨는 90대의 여성으로 치매가 있는 어르신으로서 수임 초에는 80대였다. 치매 대응형 그룹홈에 입소 중에 있으며, 수임 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다. 친족과는 모두 소원한 관계에 있으며, 낙상 골절로 인한 입원이 1회 있었다.



[그림 Ⅳ-5] 사사다 씨 다학제팀 지원 체계

시마복지정보넷(Hiroshima Fukushi Net), https://www.hiroshima-fukushi.net/fukushi-wp/wp-content uploads/2024/01/福祉ひろしま-2024年1月号_権利擁護課-訂正版.pdf (검색일: 2025.08.10).

② 당사자 밀착형 후견 활동(참여지원)

시민후견인은 당사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게 주변 자원을 이용하여 욕구를 실현하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다양한 환경 자극을 통해 당사자 스스로 소원했던 가족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다른 동거인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Ⅳ-17〉 당사자 밀착형 후견 활동 내역 (1)

구분	활동 사례
의사소통	- 주 1회 당사자와 만난 덕분에 얼굴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 비교적 원활하게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대화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다. - 당사자는 예전에 살았던 지역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당사자의 관심사를 찾고 있었다. - 당사자의 이전 취미였던 사진을 기반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가서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욕구파악	- 당사자와 시설 안에서 함께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화를 통해 당사자가 '쇼핑하고 싶다'는 욕구를 알게 되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설 직원과 상담함으로써 이제까지 할 수 없었던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인과의 관계형성	- 당사자에게 동요를 불러 드리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고, 같은 방에 거주하던 다른 환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 기존에는 소원했던 가족과의 관계에서 당사자 스스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③ 지역복지형 후견 활동 (마을만들기의 일환)

시민후견인의 주요한 업무는 아니지만, 시민후견인 활동을 통해 주변에 해당 제도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공생사회 실현에 기여하였다.

〈표 Ⅳ-18〉 지역복지형 후견 활동 내역 (2)

구분	활동 사례
재난훈련	- 시민후견인은 이전의 재난방지 자원활동 경험을 살려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입소시설에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재난훈련을 실시했다. - 입소시설의 운영추진 회의에 출석하여 시설 내 운영에 대해 제3자로서 의견을 전달한다.
피후견인 외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 평소에 신경이 쓰였던 이웃에게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소개하거나 민생위원과 연계하여 가족에게 연락하고 성년후견안심센터를 소개하였다. - 시민후견인이 만든 전단지를 활용하여 제도를 계발하고,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사회 주민을 연계한다.
기타	- 시민후견인 교육시간에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구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복지 활동계획 위원으로 참여한다. - 치매어르신 카페에서 자원활동을 한다.

2. 소결

1) 일본

일본의 성년후견제도는 치매가 있는 어르신과 지적·정신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권리옹호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당사자를 대변하여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연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크게 시정촌(지자체), 중핵기관, 사회복지협의회(성년후견지원센터) 등 세 가지의 주체가 존재하며, 지자체별 사회복지협의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성년후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후견 등 개시 전후를 불문하고 팀에 대해 법률·복지 전문직 단체 혹은 그와 관련된 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의 등을 활용하여 협의한다. 서비스 이용자와 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문가가 상담 및 조언을 제공하는 구조로써, 대표적인 전문가로는 개호지원전문원, 상담지원전문원, 보건사·사례관리사, 개호서비스사업자 및 장애인복지서비스사업자, 가족·친족, 민생위원·아동위원, 주치의·의료기관, 개별 과제에 대응하는 지원자 및 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다학제적 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공공후견인에 대한 유형은 크게 시민후견인과 법인후견으로 구분되며, 시민후견인은 주로 시장신청 후견 유형에 대응한다.

여기서 시장신청이란, 65세 이상인 자(65세 미만인 자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당사자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장이 후견개시 심판 등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지적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인복지에 관한 법률 제51조11의2에 근거한다.

당사자의 의사능력 및 가족 유무, 생활환경, 자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특히 후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 시장신청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처분 등 재산관리 문제에 있어, 일견 복지 분야라고는 말하기 힘든 욕구로 보이는 경우에도 친족 등에 의한 후견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大阪成年後見制度研究会, 平成２６年).

실제로 고령자와 장애인 모두 본인 및 친족 등에 의한 신청보다 시장에 의한 후견 신청이 매년 가장 높았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후견인 연계에 대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의 경우, 주로 공무원 대상으로는 시장신청 업무 등의 실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시민 대상으로는 후견인 양성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역량강화와 인력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명시하고, 담당자 역량 강화 및 후견인 양성에 관심을 가지며, 특히 지자체와 그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당사자와 후견인 연계에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권리옹호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V 현장전문가 질적 조사

1. 조사 개요

본 연구의 현장전문가 질적 조사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뿐 아니라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후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조사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후견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는 앞서 2, 3장에서 분석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약 3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추천받거나 기관 유형이나 지역을 고려하여 책임연구자가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모집하였다.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일 경우 포커스그룹인터뷰 형태로 진행하였으며,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대일 심층인터뷰 형태로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하였다.

1) 공공후견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

공공후견 관련한 서비스 제공주체는 공공후견을 담당하고 있는 법인 2곳의 담당자,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후견법인 담당자 1인,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사업 담당자 2인, 치매안심센터 내 후견 업무 담당자 2인,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2인,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2인까지 총 11명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된 현장전문가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2인을 제외하고,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주로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이 포함되었다.

〈표 Ⅴ-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정보

연구참여자 구분		지역	성별	소속기관	소속기관 유형
A1	부장	서울	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공공후견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A2	팀장	서울	여		
A3	부장	서울	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후견법인	
A4	국장	서울	남	정신장애 공공후견법인	
A5	부장	서울	남		
A6	관장	서울	남	사회복지사 전문가후견인	
A7	팀장	서울	남	사회복지사 전문가후견인	
A8	팀장	서울	남	치매안심센터 공공후견 담당	
A9	팀장	서울	남		
A10	공공후견인	인천	남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A11	공공후견인	경남	여		

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주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주체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장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는 기관의 담당자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2인, 장애인지원주택 담당자 2인, 장애인복지관 1인, 장애인 탈시설지원단 담당자 1인, 장애인거주시설 1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1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2인까지 총 10명이다. 모집된 현장전문가는 모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지역별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력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표 Ⅴ-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참여자 정보

참여자 구분		지역	성별	소속기관	소속기관 유형
B1	기관장	경북	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B2	기관장	전남	남		
B3	팀장	인천	여	장애인지원주택	
B4	팀장	서울	여		
B5	팀장	경기	여	장애인복지관	
B6	팀장	부산	여	탈시설 장애인자립지원센터	
B7	사무국장	경남	남	장애인거주시설	
B8	사무국장	부산	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B9	대리	경남	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B10	센터장	전남	남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3) 인터뷰 질문 개요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전에 인터뷰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여 사례에 대해 미리 생각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뷰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표 Ⅴ-3〉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질문

구분	질문 주제
구분	- 소속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서비스 소개
	- 후견지원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였던 1~2개 사례 소개
	- 각 대상별 후견지원이 필요한 영역
	- 후견인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횟수, 주기 등)
	- 소속기관 내에서 후견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사업인력, 공공후견인 양성, 공공후견의 범위, 사업비 부족, 슈퍼비전체계 부재 등)
	- 각 대상별 공공후견지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 각 대상별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법인의 역할, 후견지원 범위의 개선, 유연한 지원을 위한 대안 등)
	- 1인이 아닌 다학제팀 단위의 후견업무 지원에 대한 의견(방법, 실현 가능성 등)

2. 분석 결과

1) 공공후견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

(1) 후견 선임 동기와 필요성

① 행정적, 법적 절차로 인한 후견 선임

후견인의 선임은 대부분 가족이 없는 무연고일 경우 선임되지만, 취업이나 직업재활시설 등 복지서비스 이용 시에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사기 피해나 범죄 피해 및 가해,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경찰 조사가 필요할 때도 필요하였다.

> 이제 발달장애 청년 사례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이제 도전 행동이에요. 공공후견인이 모집이 안 되다보니까 전문가 후견으로 연계가 되었어요. 집에서 쿵쾅쿵쾅거리고 이웃들한테 그리고 또 앞에 누가 나타나면 참 그 빠른 시기에 백내장이 왔어요. 시력에 그런데 그 사람 형체가 보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만지면서 또 꼬집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웃집 사람들 다 꽃이 피고 또 집에서 막 도전 행동할 때 쾅쾅거리고 또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요소로 인해서 이웃들이 상당히 피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었냐 하면 집주인한테 그 민원을 제기하고 또 피해를 본 이웃이 경찰에 폭행 신고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겹치면서 그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제발 이사를 좀 가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또 지적장애인이고 그 어머니의 후견인이 이제 저이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A6)

> 50대 성인 발달장애 이제 분이셨는데 이분이 염전노예 피해자셨어요. 2013년에 구조돼서 서울로 상경을 하셨고, 법률적 개입을 통해서 이제 이런 피해 회복을 위해서 변호사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정리되고 서울에서 이제 살 수 있게끔 고시원까지 알아봐 주시고 이제 개입을 끝낸 거죠. 2013년 그 이후에 법률 계획이 끝나고 바로 노숙자로 이제 전락이 되셔서 2021년까지 한 8년 정도 동안 빚이 9억 정도 증가를 하셨어요. 노숙 생활을 하시면서 근데 이제 대포통장이라든지 이런 사기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차명 계좌가 20개가 넘었고, 사업자도 이제 20~30개 정도 있으셔가지고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21년에 이제 후견인이 좀 도입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하셔서 1차로 후견인을 선임하셨는데 그게 처음에는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된 뒤에 이제 법조 통장 문제나 사업자나 밀린 세금 국세가 막 몇 억씩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대포 그러니까 이름을 빌린 사업자들이 소득을 신고하면서 이분 앞으로 이제 국세랑 지방세가 다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위법 사항들을 1년 동안 해결하시고 거의 다 정리가 될 때쯤에 이제 변

호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는 저희가 다 해결했으니 나머지는 다른 분이 하시는 게 낫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일상생활 통제라든지 서비스 연계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안 되고 이제 서울역에서 계속 거리를 전전하고 계시니까 실질적인 이제 서비스 직접적인 서비스는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하셔서 전문가가 오히려 개입을 했다가 변호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된 케이스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노숙자를 조금 도와줄 수 있냐 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일 문제가 처음에 찾지를 못했어요. (중략) 발달장애인은 사실 주소라든지 인물이 특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그래서 처음에 그게 찾는 건 어렵고 그다음에는 이분이 사실 수급자일 줄 알았는데 수급자도 아니셨던 거예요. 제가 후견인으로 변경되고 나서도 이제 변호사님이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전혀 개념이 없다 보니까 수급자가 어떻게 돼야 하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셨고 그리고 지금 사업자나 이런 대포통장 문제는 다 해결하셨지만 소득 신고가 되는 부분은 해결을 못하시고 저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당장 그렇다고 해서 세무사를 제가 선임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그냥 제가 이제 세무서를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 소득 신고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근데 사업자가 정리됐는데도 소득이 계속 신고되고 있었던 게 좀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인력사무소에서 이분 이름으로 계속 소득 신고를 사업자가 아닌 이분이 돈을 받아가고 있다 이런 임금 신고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좀 회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분한테 그런 이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된다고 나오니까 건강보험금도 막 엄청 많이 나오고 개인 부담금 같은 게 내지 않았던 것들 그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방문해서 이게 내 소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인의 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소득 정정 부인 내 소를 직접 제시하게 됐고 그 세무서랑 이제 이게 소득이 진짜냐 아니냐를 가리는 이제 공방을 벌이는 거거든요. 저랑 세무사랑 후견인이 이제 피후견인의 소득을 정정하기 위해서 그런 세무 관련된 업무를 직접 해결해야 됐던 점이 조금 특이하고 어려웠고 그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A7)

② 금융, 재산 처리의 필요성

부모 사후에 공공후견인이 미지정된 경우에도 형제, 친지 등이 별도로 없거나, 상속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직권 결정에 따라 공공후견 또는 전문가후견인이 지정된다.

30대 발달장애인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모친이 굉장히 이제 재산이 많으셨는데 재산이 20~300억 정도 되셨어요. 근데 전혀 준비를 못하고 갑자기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입양을 했던 형이 한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발달장애인 자식 한 명만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릴 적에 입양을 하셔가지고 이제 두 명의 형제가

이제 갑작스럽게 큰 재산을 물려받게 됐는데 형님 분이 이제 입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재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차별이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거를 판사님이 보시고 이건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처음에 이 사건이 들어오게 된 게 그 형이 해견인을 시켜달라고 후견이 신청한 거야. 엄마의 재산을 건물이 있었는데 건물이 2분의 1씩 서로 상속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본인이 관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이 이 동생의 발달장애 있는 30대 동생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청구를 했는데 청구 과정에서 판사가 친족을 완전히 배제시킨 이제 선제적으로 조기 개입을 한 사건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조금 공 법원에 이제 후견인이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처음에 아예 사건이 개시될 때부터 사회복지사와 법무사를 다학제적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후견 개시부터 지금 재산 보호 목적으로 어쨌든 개입이 되어 있고 지금 형과 기타 친족들이 정말 알 수도 없는 먼 친척들이 다 나오셔서 저희랑 분쟁을 겪고 있는데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건강한 분쟁을 원했어요.

법원이 건강한 분쟁의 지속적인 과정을 원했고 그 과정에서 균형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을 이제 안전장치로 이해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후견인단과 저하고 이제 법무사님이 이제 동시에 후견인으로 선임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이 재산 관리하시고 제가 신상 보호하면서 가족들과 계속 소통하는 관계를 지금 이어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건물 관리 그게 제일 어렵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법무사님이 대부분 직접적으로 하시고 저는 이제 집에서 생활하는 거 관련된 지출을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돈을 제가 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A7)

(2) 공공후견인의 한계

① 제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현장전문가들은 기존 공공후견인이 제도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선임되더라도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려웠다고 답하였다. 공공후견인은 전문가가 아닌 시민후견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회복지 자원이나 정보에 대해 잘 인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정보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중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인지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때가 있는데 시민후견인들은 그런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 공공후견인께서 아주 선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발달장애 특성이라든가 또 그런 발달장애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료 정보라든가 복지 정보라든가 또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업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면 더 나은 후견 서비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공공후견은 그런 자격 요건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잖아요.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진짜 그런 정도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진 분이 공공후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발달장애는 혼자서 후견하는 거 쉽지 않은 거라고 봐요. 만약에 저 혼자였다면 그렇게 또 못했을 거예요. 저 혼자였다면 저는 그 공공 후견인과 그분이 이렇게 알선하고 그러지는 못해도 저하고 제가 또 나름대로 의지를 했어요. 아드님의 공공후견인은 안 하셨다기보다 복지에 대한 정보라든가 진행 과정을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일반 시민이니까. 시민의 전문성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엄마의 후견인 엄마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내가 엄마라면 병원에 의탁을 했을 것이다. 또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니까 수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엄마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진행을 했던 거죠.(A6)

그러나 이 장애인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거냐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선택지가 abc가 있다고 할 때 그 abc에서 그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해서 이분이 선택하도록 또 선택을 할 수 없는 여건이면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숙고 그리고 또 슈퍼비전 자문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능력 그거는 우리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직역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공공우여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기획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일반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이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좋아라고 이제 나름대로 개인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개인적 견해를 클라이언트 피견인한테 맞느냐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피후견인의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하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이다. 그러면 후견인도 자격을 갖추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A6)

② 행정적 업무 부담

공공후견인의 활동 인원도 소수이지만, 공공후견인의 평균 연령대가 높아 후견사무 업무나 복지서비스 연계, 행정기관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특히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 고령의 공공후견인들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로 인해 제출기한을 조정해주기도 한다.

공공후견인 자체를 고용하기도 힘들지만, 공공후견인의 평균 연령이 다 50~60대잖아요. 그러면 후견 사무 보고나 이런 것도 힘들어하세요. 그럼 가끔은 가정법원에서 월별로 보고하는 걸, 매년 보고하는 걸로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그럼 후견 사무가 제대로 될까요? (A3)

후견인이 신상 보호를 피후견인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후견인은 후견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피후견인은 이제 후견 사후 보고서로 제출된 상황과 특별히 별다른 상황은 특이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보통은 이제 다들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고령자인 경우는 많이 있었거든요.(A9)

그런 일이 많다 보면 이제 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보기 마련이고 저희 법이 이제 이거는 옆에도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지금 한 사람 예산 문제 때문에 사람을 못 뽑아서 대단히 많은 피후견인을 맡고 있으니까 행정적인 업무 부담도 큰 편이고요. 거의 뭐 40명 가까이씩 맡고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예산 문제라서..(A5)

후견인들이 계속 후견 사무 보고서는 매년 내고 있죠 어떤 분은 간혹 법원에서 2년에 한 번 내기도 하더라고요. 후견인이 고령이거나 그러면은 법원에서 좀 후견 보고서 쓰기 힘들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었는데 2년에 한 번으로 조정해 준 케이스도 있으시더라고요.(A8)

③ 현업과 병행하는 어려움

현업을 병행하는 공공후견인은 후견 활동을 수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후견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인권 보호의 가치에 공감한 사명감에 기반하고 있었으나, 활동이 주로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종의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 이해를 얻기 어려웠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일반 직원의 경우, 상급관리자가 근무시간 중 후견 업무 수행을 허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공공후견인 직무의 특성상 피후견인의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의사 확인이나 행정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네 사실 그 후견 활동하면은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또 여러 가지 일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가 사무적인 일이 아니라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정적으로 경제 관리를 한다든가 무슨 공무를 봐준다든가 이러기 이전에 서로 간에 대한 어떠한 신뢰나 관계 형성이 제일 중요하지 끝까지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일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 형성에 대해서 좀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에

좀 한 한 달에 세 번 그러니까 제가 바빠요. 사실은 공공후견 활동으로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네 이렇게 후견인들을 뵈야 돼요.(A10)

그런데 사실상 그 기관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에 따라서 그게 너무 중요해요. 퇴사하고 나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했는데 한 번 가는 것도 네 그렇죠 그게 사실상 산천군내에 전담 주무관님이 저를 굉장히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할 수 있었지 센터장님은 정말 정말 싫어하셨어요. 엄청 싫어하셨고 또 하나는 그 한 군데는 주무관 보고서는 다이렉트로 주무관님께 가게 돼 있으니까 보고를 했을 때 주무관님이 거기에 대한 시정 공문 보내고 막 그래서 그쪽 시설에서 저희 센터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엄청 혼나는 거 이상으로 혼나고 핍박에 가까운 결국에는 퇴사를 어떻게 하게 했냐면 굉장히 못살게 굴었고 1년을 좀 버텼어요. 근데 제 일을 뺏더라고요.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 힘들게 하더라도 저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일을 했는데 그래도 버티니까 일을 뺏는 거예요. 어쨌든 기관에 있으면서 그 활동을 한다는 건 개인이 그 일에 인권 증진이라는 것 공공 후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A11)

(3) 공공후견제도의 구조적 한계

① 후견활동 감독의 한계

후견법인과 가정법원은 공공후견인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후견법인의 모니터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후견개시 결정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감독은 보고서가 들어오지 않을 때 등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실 지역에서 감독이 필요한 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은 되고 있어요. 정황으로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거라 시급을 다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원까지 들어가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지역 내에서 해결하도록 했거든요. (A2)

저도 후견 감독 업무를 하고 있지만, 성격들이 감독 건수 자체가 매우 적어요. 가정법원에서도 재산이 없거나, 정기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후견 보고서가 안 들어오면 확인하는 그 정도인거죠. (A7)

② 지자체의 후견감독 기능의 한계

공공후견에 대한 감독 기능은 지자체에 있으며, 담당 공무원에 따라 후견에 대한 감독 기능과 역할 수행 정도에 편차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 순환보직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의욕이 있는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은 모니터링 기능만 있을 뿐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나 갈취 등의 정황이 있어도 지방자치단체나 법원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감독이나 직권조사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이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어쨌든 주무관이 하잖아요. 사실상 이게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이 주무관이 바뀔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죠. 또 그 주무관님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미온적이고 수동적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로드맵에서는 지자체 발달센터 후견 법인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지자체 역할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A1)

> 근데 아마 이제 생겼어도 그런 개인 피후견인에 대한 법원 청구는 여전히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외에 후견 개시 심판 청구라든가 후견 감독인 변경이라든가 기타 다른 감독인의 업무와 관련된 거라든가 게시 단계에서 사실 저희 기존에는 저희 하나 복지부 말고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개시 심판 단계에서도 저희가 좀 일이 많았거든요.
> 어디서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지자체 공무원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어요.근데 갑자기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주무관이 후견 심판 청구를 생전 써 보셨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이제 샘플 드리고 뭐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 지자체 공무원한테 또 알려줘서 또 매번 바뀌고 이러니까 알려줘서 하는 거 (A5)

③ 슈퍼비전 체계 부재

실질적으로 공공후견인은 시민후견인이며 일반인들이 일정 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체계는 부족하다. 후견법인의 경우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슈퍼비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발달장애인이나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주로 개인 공공후견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고 그에 대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의 경우 치매공공후견인에 대한 수퍼비전 체계뿐만 아니라,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는 담당자에 대한 수퍼비전 체계도 부족하다. 때문에 의욕이 있는 담당자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사례에 대해 주고받거나 개인적으로 조언을 받기도 하지만 공적인 차원에서의 수퍼비전 체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사례관리랑 이것도 똑같은데 그냥 그 즉시 그 순간에 발생됐을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봤을 때 저 이때 이렇게 했어요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나 멘토링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건데 사실 치매 센터가 이렇게 저희가 하나의 대기업에서 이렇게 쪼개진 것도 아니고 각 구에서 알아서 봅아서 일하는 거고, 그 안에서 물어보거나 해야 하는데.. 타구에 물어보는 거는 진짜 오랜 기간 친분이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쌓은 사람이나 되는 거지 보통은 타 지역 사람하고 관계를 그렇게 막 네트워크 지내지는 않잖아요. 부족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 물어봐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끙끙 앓아내는 상태가 돼버리고 관리자도 모르니까.. 관리자도 후견 사업은 거의 모르거든요.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겉핥기 정도만 아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게 제일 힘들죠. 그래서 보수 교육이나 이런 게 물론 있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A8)

각 상황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기 상황이지만은 예를 들어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후견인이니까 거기 dni를 사인하지 말아라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병원에서 안 해준대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이렇게 처치를 안 해준대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니까는 중치라든지 어디에다 슈퍼비전을 받을 곳이 없었거든요.(A9)

이게 탈시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립지원사도 있고 활동지원사도 있고 충분히 이제 그걸 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공 후견까지 이제 지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트처럼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저는 이제 그분들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지자체 공무원도 무조건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대기가 오래 걸리니까 막 불안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이게 이분들의 역할 범위가 좀 모호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A2)

그냥 옷을 막 사준다고 해서 그분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고민이 돼요.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후견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당신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이런 것들을 터놓고 얘기해서 공유를 해서 좀 이게 좀 거기서 지금 선생님도 저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뭔가 인사이트를 받듯이 저희도 뭔가 그런 모임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받고 한번 그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은 사실은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알아서 그렇죠 그렇죠 혼자 다 알아서 혼자 다 알아서 하는 게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고민하고 있어요.(A10)

④ 인력 및 재정적 한계

후견인은 법률상 의사결정 지원이 주된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의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까지 관여하게 되어 후견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후견인의 소진과 이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는 법인으로서 후견을 하고 있는 후견법인들도 사업비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정신장애인 공공후견을 수행하고 있는 법인들은 전국을 커버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법인 자체 내에서 인력 채용 자체가 어려워 잦은 인력 교체가 되면서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정신장애 쪽도 법인의 사업비를 주는 거지 이렇게 인건비를 주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실질적으로 힘들긴 하고 예를 들면은 시설만 해도 몇 명당 인력을 몇 명을 둬야 된다 이런 거는 있는데 지금 이게 120명인데 4명의 인력으로 한다는 게 어렵고... 정규직을 뽑기에는 예산상 부족함이 있어서 비정규적으로 계약직으로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원치 않는다 이런 사정도 있었고 해서 대신 신입 직원은 거의 경력이 없는 직원을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사업을 실무를 보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경력직을 뽑을 수가 없어요. 예산이 적어서 (A4)

예산 조금 주고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만 가중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이거 괜히 이게 이상적이다라는 거 하는 그거에 맞춰서 인프라가 있어야지 이상적이 되는 거지 예산 조금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부담만 가중돼서 후견이 더 안 될 수가 있습니다(A9)
일단 서비스를 해야 하는 지역은 전국 시군구 해서 절반으로 나누었는데, 저희 법인들에 주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럼 인건비도 부족하고, 모니터링할 인력도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 지방은 여러 군데 모니터링해야 된다고 하면 자주 그만두거든요. (A2)

더군다나 시에서 매년 또 써서 내야 되잖아요. 매달 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만 해도 업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에 들었는데 그 후견을 담당하게끔 하는 직원 보수가 그게 안 돼서 오죽하면은 중앙회 총 사업비에서 드리고 있어요. 직원 직원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뭐야 가족지원센터에서 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런 이런 상황인데 인건비 보장 필요할 것 같아요(A10)

⑤ 공공후견인 개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

공공후견인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경우, 권리침해 위험이 상당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선임된다.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이 의지하는 사람은 공공후견인이 되는데, 공공후견인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다 보니 공공후견인 개인에게 과중한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후견인을 더 이상 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봉사활동으로 알고 시작하였으나 법적인 권리를 대신해준다는 점에서 과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므로 후견인 양성교육을 받고도 정작 피후견인이 매칭되었을 때는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지 않게 되기도 한다.

> 원칙적으로 법률에는 법률행위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후견 제도인데 지금 그 때 제가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보니까 그게 딱 어떤 게 법률행위 의사결정이고 어떤 게 이게 딱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내가 이제 그분한테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막 전화 이런 현실이 많아요.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게 딱 이렇게 이런 화재가 발생하면 딱 뭐 후견인이 알아서 다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막 이건 후견인 원래 제도 취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고 너무 복잡한 케이스는 안 하고 그러는 거죠.(A3)

>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어쨌든 이거는 의사 결정하는 데를 조금 지원을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사실 깊숙이 들어가면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 후견인이라고 이렇게 결정하게 도와주는 사람이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 나에 대한 모든 걸 다 의지하게 되는 상황에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점 가중해지는 거죠. 이게 일상까지도 들어가는데 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저희 일상생활 할 때도 의사결정 확률이 엄청 많아 많잖아요. 이런 게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이제 과해지는 거죠.(A4)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좀 무게감은 있어요.뭐냐 하면 이것이 법적 법적 이러면 벌써 네 법적으로 뭔가 이러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 사실은 그게 봉사활동하고 비슷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잘 설명을 해줘야 될 게 이 한 후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공 후견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공공 후견인이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감독 기관이 있고 여러 주변에 지원 체계가 있어서 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서 피후견인을 이렇게 잘 돌보는 거지 그것이 후견인 개인에게 모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이렇게 하면 저 같아도 이거 법적 이러면 벌써 안 하고 싶어 이 얘기가 들죠.그런데 너무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요.(A10)

(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발전 방향

① 공공후견인의 활동 지원 체계 확립

공공후견인에 대한 슈퍼비전 체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후견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기는 어려우며 제도의 발전과 공공후견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퍼비전을 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시민후견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공공후견에서 어떤 사례는 시민후견으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례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서로 상호보완적인 설계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임 이제 슈퍼비전을 줄 수 있는 선임 공공후견 사회복지사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실제로 법인 직원분들도 평균적으로 3년 정도 하니까 이 법인 후견에 대해서 좀 이해하겠다 이런 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공통적으로 이제 후견이라는 게 사회복지사가 이제 하는 업무 아니었다 보니까 이것도 전문적으로 양성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A5)

후견인의 권한을 나눠줘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후견인이 다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조항을 좀 오히려 없애고 만약에 활동지원사가 나타나면 후견인이 활동 지원사한테 이임할 수 있는 체계 그래서 서로 분담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분담제가 조금 도입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견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후견인을 둘러싸서 도움을 주는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더 많이 조사해서 유형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A6)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전문후견이랑 시민후견이랑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게 다른 이제 사례에서 보니까 시민후견 4케이스 당 전문후견이 한 명 붙어가지고 슈퍼바이저 하는 그런 그룹제가 있더라고요. 이제 네 케이스든 8 케이스든 케이스별로 그룹핑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 의견을 한 명씩 넣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 주는 형태로 전문 의견과 시민 의견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게 더 접근이 된다면 시민 후견을 몇 케이스 당 전문 의견을 투입해서 자문료를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자조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부여해 주시면 전문 후견 입장에서도 시민 후견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사실 전문

의견 시민 의견 둘 다 필요하거든요. 어떤 케이스는 시민 의견만 가도 충분한 케이스가 있는데 굳이 전문가가 갈 필요가 없고 어떤 케이스는 전문가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양립해야지만 사실 후견 제도가 발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더 필요하다 이런 구조보다는 둘 다 필요하다라는 구조로 가는 게 정책적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상호보완적인 설계가 좀 정책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A7)

우리나라의 후견인 선임은 가족후견인이 많은 편이며 여러 문제점이 언급되었다. 특히 고령의 가족후견인은 후견사무 수행 역량이 부족하여 결국 피후견인에게 필요한 제도 및 서비스 연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금품 갈취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친족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잘 하시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후견 사무 업무 자체가 힘든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만나봤고요. 그러다보니 이 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죠. 저희처럼 이런 분들을 후견보조인으로 하고, 법인 직원들이 이 분들을 지원해주는 방식처럼요. (A4)

② 네트워크 및 교육 강화

후견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약 3년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교육을 별도로 이수하기도 하였으며, 후견 업무를 하는 담당자 간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여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후견인들의 재산갈취, 유용 등이 이슈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후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후견인들의 윤리적 책임 강조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업무에 투입되는 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보니 후견 업무를 아는 사람들에게 알음알음 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몰라서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해요. 저같은 경우는 관심도 있고, 주변에 후견업무를 하시는 분도 있어서 서울가정법원 같은 데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후견 업무를 하는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생기면 좋겠어요. (A8)

근데 이제 거기서 변호사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자문 주시고 한다고는 하는데 너무 이제 법인의 역할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지금 발달 공공후견에서도 법인 건수가

조금 있기는 한데 너무 저조해서 사실은 법인 건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법인들이 좀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정신장애 쪽도 법인에서 이제 지금 후견 사무 보조인이라고 해서 지금 공공 후견인 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 번 두고 여기 법인 직원이 같이 이렇게 해서 동행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문성을 이분한테 계속 주면 그러면 이분은 한 번만 이제 초기 그것만 한 번만 가면 이분이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조금 슈퍼비전의 일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말씀하신 16개 지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분 정도씩을 이렇게 한번 둬서 조금 경쟁적으로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A2)

저는 후견인이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윤리 의식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도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용해가지고 했던 그 사례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윤리 강의 있듯이 그 윤리 의식이 후견하는 그 과정에서 매우 경계를 가져야 되는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 경계를 가지고 친족 후견도 다 그런 부분에서 법원으로부터 이제 모니터링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피후견인의 재산 또 피후견인의 인간다운 삶 이 부분에서 무엇이 이분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경계는 참..(A6)

③ 후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체제 필요

후견활동을 하고 있는 공공후견인들은 공공후견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공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대변하는 사람인 만큼 피후견인의 인권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 활동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피후견인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감독·감시하고 제재 조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만 공공후견인은 나머진 과 외 일이에요. 공공후견인은 그 피후견인의 의견이 그 상대에게 전달되도록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건 과외예요. 근데 과 외에 더 중점을 두고 그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면 그거는 공공후견인의 활동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거는 하나는 정말 교육할 때도 보수 교육할 때도 강조해요.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건 뭔가 공공 후견인이 수고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뭐가 제재가 있어야 되는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봐 감시 제도 감시 제도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피해를 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봐요.교육에서 강조하더라도 모르는 게 아니다. 교육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제재가 있습니다. 이런 감시가 있습니다. 하는 악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되죠(A11)

④ 전문기관 설립

후견 관련 현장전문가들은 대상별로 후견사업을 하기보다는 전문후견기관의 설치가 해답이라고 강조하였다. 장애인, 정신질환자, 치매, 미성년자 등 후견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지만, 후견인이 활동하는 후견업무 자체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후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민후견인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활동에 있어서 시민후견의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 후견인들의 활동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후견청 등이 설립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경기도는 지금 성년후견 제도 이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전문가 후견인 양성 교육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후견사회복지사회에서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를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마 경기도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교육적인 포트 교육적인 파트가 사실은 이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는 데를 사례를 좀 제시하면서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유사 사업 유사 사업의 정신장애나 이런 치매랑 레벨은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거기에서 하는 활동도 사실 후견 이용 지원이 그거를 넣고 나중에 이제 후견인도 전문성을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하고 저희가 만약에 슈퍼비전 체계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이제 슈퍼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양성할 수 있는 그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가 대리할 거냐 지원할 거냐 이 경계하고 유사하게 자기 결정하는 거냐 자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거냐 무거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 저는 시민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A6)

그래도 어쨌든 진짜 큰 범위 내에서 후견이라는 그걸로 팀을 만들든지 아니면 아까 후견청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파이가 하여튼 후견에 대한 범위나 전문성이 좀 좋아질 것 같아서 후견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지금처럼 사실은 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방향성은 이제 탈원화나 탈시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에서(A2)

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주체

(1) 공공후견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

① 후견 선임 동기와 필요성

가.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무연고인 경우

후견인의 선임은 대부분 가족이 없는 무연고일 경우에 1차적으로 고려된다.

> 이제 가족이 없으시고, 기초생활수급도 있고, 또 금전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연계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표현이 충분히 되시거나 금전관리만 필요하시면 신탁(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만 연계하기도 하고요. (B3)

> 일단은 이제 무연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필요하다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00동에 있는 주택에서 한 분이 무연고신데 지난 2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분의 장례 절차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장례 절차 이전에 약간 연명 치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저희가 되게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무연고시고 이제 저희가 보호자가 아닌 거죠. 이게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생활 시설하고 또 달라서 거기서는 이제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시설장이 이분의 연명 치료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장례 절차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계신 이제 재산 같은 경우에 처리 같은 것들이 다 대행이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보호자 자격으로 근데 이제 저희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때 좀 되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연명 치료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연명 치료가 거의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비용을 이제 본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장례를 치르는 절차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 이후에 좀 그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B4)

나. 금융, 주거 등 계약 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금융 거래나 주거 계약 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부모가 있더라도 공공후견인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었다.

> 저희 아이가 이제 적어도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줄 알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공공후견인 동행 요구)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사실 그때 만약에 이거를 며칠 안에 넘기지 못하면 제가 새로 산 차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되게 난감했었어요. 현실적으로

조금 와닿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은행을 은행 업무를 보러 가도 저희 아이가 본인 의사가 이제 의사 표현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실 카드 한 장 만들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금 본인 카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B4)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남동생 수 있고 이렇게 4인 가족이었는데 이제 아버님도, 동생분도 지적 장애를 갖고 계시고 어머니도 약간의 저장강박과 같은 정신장애를 갖고 계신 상황에서 이제 40년 동안 이제 20년 동안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동안 거의 집에만 이제 방치 계시다가 이제 분리돼서 나오신 분인데 사실 지금은 좋은 활동지원사분들 만나고 저희하고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는데요. 이분도 이제 40대 중반에 접어들었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냥 일상에서 좋아 싫어하나 아주 이렇게 뭔가를 간단하게 요구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이제 금전적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거의 담당 전담인력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분도 계약이나 은행 거래 등은 일정 부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있겠죠. (B4)

다. 범죄, 사기 피해 노출이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

부모가 있거나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표현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공공후견인 선임이 고려된다.

30대 젊은 분이긴 하지만 이제 약간 이분이 틱톡이나 SNS로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서 약간 이렇게 금전적인 사기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약간 그래서 한동안은 또 신용불량자로도 계셨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증보험하고 이런 쪽하고 다 KT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다 해결이 된 상황이긴 한데 그 해결을 할 때도 사실 저희가 공적인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되게 어려웠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후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셔서 막 이제 혈전 때문에 이제 폐색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B4)

② 가족후견인의 부담

가. 돌봄 지속성 불안

현재 공공후견인 역할을 부모가 수행하고 있더라도, 부모가 초고령인 경우가 많아 추가적인 공공후견인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사신다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은 발굴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B4)

나. 비공식적지지 체계 단절

장애인거주시설에 있었던 장애인 당사자는 비공식적 지지 체계가 단절된 경우가 많아, 시설 내에 친족후견인이나 공공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더라도 이를 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 두 분께서는 기존의 시설에서부터 후견인이 있으셨어가지고 나오시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그 분이 공공후견인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가족이나 지인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분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좀 있으셨었죠. (B3)

다. 신뢰하기 어려운 가족후견인

가족이 후견인으로 활동하더라도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과도한 가족 업무를 시키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 이게 가족이 하는 경우에도 문제인 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가 상속 문제 때문에 선임이 되었다가 상속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B1)

>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분이 담당하시게 되었는데, 이 분이 농사 일을 시키기도 하고, 임금도 제대로 안 준 거에요. 여기가 농촌이잖아요. 발견하기가 어렵죠. (B1)

③ 공공후견인의 자질 문제

가.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

공공후견인은 일정 시간의 교육만으로 활동이 가능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제도 정보 제공과 서비스 신청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 분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71세이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시죠. 그러면 결국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도 정보를 주시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계된 이후에 저희가 다 알아봐드렸었죠. (B3)

나. 고령화된 후견인

공공후견인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실질적인 후견 사무 업무를 담당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후견 사무보다는 통제에 가까운 요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 저희가 활동지원사를 통해서 후견인과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알게 된 건인데요. 김치냉장고를 산다거나 이 분이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공공후견인이 제한을 하시는 거에요. 목돈을 모아둬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분이 뇌전증 증세가 있으시고, 아내 분이 환청을 좀 보시거든요. 그러다보니 후견인 분이 이 분들은 요양원을 보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거에요. 본인이 보호자라고요. 이 문제로 저희가 후견법인과도 서로 소통을 했었고요. (B3)

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

일부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를 묻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의 개인적 관점에서 금전관리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 만약에 이번에 60 환갑이어가지고 생일잔치를 좀 크게 하셨어요. 여러 사람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좀 한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쓰셨는데 이제 왜 생일파티를 하냐 그리고 브랜드 옷을 사면은 왜 브랜드 옷을 사냐 약간 이런 거 스타벅스 텀블러를 이제 4만 원짜리로 좀 모르고 사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사자분한테 아니 텀블러를 그렇게 비싼 거를 왜 사냐 바꿔와라 이런 비싼 카페를 왜 가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신 거죠. 후견인은 만약 이분이 이제 100만 원을 벌고 보통 거주지 어서 나오면은 어느 정도 돈이 좀 목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의 목돈이 있다고 하면 이게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지원 이제 사회복지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묶어놓은 돈 500이 있으니 이 100만 원은 좀 본인이 거주 시설에서 어쨌든 지금 60이 넘으셨고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러면서 좀 200만 원을 다 썼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한데 이제 후견인 분은 이제 영수증이고 뭐고 그게 다 이제 본인이 또 후견 법인에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 쓰는 거에 너무 이제 통제를 많이 하니까 일단 당사자 분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근데 이런 조율을 중간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 같아 왜냐하면 저희는 그러면 이런 후견인에 대한 불만을 결국 후견법인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B3)

④ 공공후견제도의 구조적 한계

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

현장전문가들은 공공후견인보다는 시민후견인에 가까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자체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정후견인이면 금전과 관련해서 후견을 하잖아요. 은행에 가서 적금을 들거나 대출 서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후견인 자체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붙인다는 느낌? 지방으로 갈수록 구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냥 아무나 한다는 느낌도 있죠. (B1)

> 후견인을 신청하고 싶어도 약간 신뢰도가 굉장히 낮고 절차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필요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다가 멈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B4)

나.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한 갈등

특정후견의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공공후견인과 장애인 당사자를 지원하는 복지기관 담당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공공후견인 분들이 활동지원사에게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약간 위계적으로 활동지원사나 일상돌봄 선생님들한테 업무를 지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 어떤 경우는 일상돌봄 선생님이 이 공공후견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두는 상황도 발생했었어요. (B3)

> 저희 전담인력들이 지원을 하다보면 공공후견인 분이 지정된 분이랑 지정 안 된 분들이랑 소통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한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분이 본인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시다보니 쇼파 하나를 사더라도 이 분이 필요한 지 여부보다 공공후견인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사실 지치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 분의 업무가 어디까지인가 고민을 하게 되요. (B4)

다.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 부재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의 모니터링과 감독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후견법인들이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질보다는 사무적 지표 평가를 위한 방문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후견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리와 방향 설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타났다.

> 저는 현실 가능성은 없을 수 있는데 그냥 후견 법인인가 그 안에서 또 후견인이 한다고 하면 큰 지금하고는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차라리 좀 기관하고 기관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후견인 여기서 후견인이 이렇게 동시에 해서 좀 업무 수행을 나눠서 한다거나 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은 후견인에 대한 걸 모니터링하는 건 사실 후견 법인만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니터링은 정말 그냥 외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평가 후견인에 대한 이런 평가도 아예 별도의 기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B3)

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발전 방향

가. 의사결정지원 모델 필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에 종사하는 현장전문가들은 현행 공공후견인 제도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당사자 중심의 의사결정지원 모델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저희 당사자분도 이제 후견인은 싫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제 변경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후견인이 어쨌든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 변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특별하게 무슨 정말 그런 걸 횡령이나 이런 걸 잘못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에서 저희가 후견 법인 후견 기관과 이게 좀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법인 후견 기관에서는 어쨌든 후견인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었고, 저희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자기결정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트러블이 있었고 회의도 진행을 했고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법인에서 사과도 하시고 하시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B3)

나. 전문기관 설립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은 공공후견인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신상 관련 지원 업무가 존재하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연계할 수 있는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재정적인 부분이나 의료적인 부분, 장례 절차, 재산관리 등은 저희가 해결 못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 기관 내에도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 같아서 걱정은 되요. 이럴 때 믿고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너무 좋죠. (B6)

다.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전문가 양성 필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왜냐하면 한 사람이 정말 그 한 명을 하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공공후견인 분 중에 자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은 거는 사실이신 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립에 대한 의미나 의사결정권에 대한 이런 것 자체의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신다고 해야 되나 당사자의 의견보다는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아니면 그냥 무조건 돈 아껴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이라는 그런 것 자체에 고려는 없이 좀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요. (B3)

라. 네트워크 및 교육 강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들은 공공후견인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뿐 아니라 의료·법률·경찰 등 다양한 전문기관 간의 상시적 네트워크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최선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 지금 충분히 전담인력이나 수행기관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병원 자체에서도 이제 장애인 분이라고 한다고 뭐 완전 거부하거나 이러지는 않긴 하거든요. 장애친화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알아보는 식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랑 좀 얘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가면은 충분히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냥 한 분에 대한 발달장애인 분에 대해서 그냥 제일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그냥 그분이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들이 다 이 사람이 얘기하면 싫다 그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좋다 그러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이 사람이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유관기관들끼리 평상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결정을 좀 미리 해놨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B5)

3. 소결

본 장에서는 공공후견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를 통해 사업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1) 공공후견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주체

후견의 개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매우 부족하여 의사결정의 대리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권리침해의 위험이 상당한 경우이다.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줄 가족이 있다면 친족후견인이 선임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공공후견인 또는 전문가후견인, 국선후견인이 선임된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후견이 선임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했는데, 대부분 행정적,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었다.

공공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일정시간의 교육을 수료 후 매칭되어 활동하는 시민후견인이며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피후견인에게 있어서 심리적, 정서적 지원이 되어 주기도 하지만 취약한 대상자의 후견인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은 일상생활에서 권리를 대변해줄 공공후견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복지정보, 서비스,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의 활용이 필요한 대상자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입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개입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 활동하는 공공후견인의 경우 이러한 역량은 부족하다. 행정적 업무 역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후견인들은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하지만 그런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후견인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로 인해 후견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공공후견인이 제대로 매칭되지 못하는 현상으

로 이어지게 된다.

치매 공공후견인의 경우 대부분 퇴직자들이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의 경우 현업을 갖고 있으면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가 후견인도 현업을 갖고 있지만 의사결정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해주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소속된 기관의 이해가 수반될 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과의 신뢰를 쌓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 형성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업을 가진 공공후견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는 않다.

공공후견인의 한계 외에도 공공후견제도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공후견은 지자체에서 후견활동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하지만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 등으로 후견감독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고, 담당자에 따라 업무 정도에 편차가 있기도 하다. 이는 후견인의 활동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어 후견인의 부정을 발견해내는데 있어서 시차적 한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슈퍼비전 체계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된다. 치매공공후견인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담당자가 치매공공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 역할을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순환보직 등으로 편차가 발생한다. 때로 사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긴 하지만, 이는 공적 지원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몇몇에 한정되어 있다.

부족한 후견인력도 문제가 된다. 후견인은 법률상 의사결정 지원이 주된 역할이지만, 실제로는 재산, 의료, 주거 문제 등 다양한 일상생활까지 관여하게 되어 후견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후견인의 소진과 이탈로 이어지기도 한다. 시민후견인으로 활동하기에 과중하고 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되다 보니 후견교육을 받고도 후견활동을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거나 역량을 갖춘 공공후견인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는 결국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의 발전적인 방향은 공공후견인의 활동지원체계, 즉 모니터링과 수퍼비전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로 도

움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대상별로 후견사업을 하기보다는 전문 후견기관의 설립을 통해 후견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후견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민후견인과의 공조를 통해 피후견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Ⅴ-4〉 공공후견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대주제	세부주제
후견선임 동기와 필요성	- 행정적, 법적 절차로 인한 후견 선임
	- 금융, 재산처리의 필요성
공공후견인의 한계	- 제도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 행정적 업무 부담
	- 현업과 병행하는 어려움
공공후견제도의 구조적 한계	- 후견활동 감독의 한계
	- 지자체의 후견감독 기능의 한계
	- 슈퍼비전체계 부재
	- 인력 및 재정적 한계
	- 공공후견인 개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발전 방향	- 공공후견인의 활동 지원체계 확립
	- 네트워크 및 교육 강화
	- 후견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체계 필요
	- 전문기관 설립

2)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주체

먼저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Ⅴ-5〉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대주제	세부주제
후견선임 동기와 필요성	-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무연고인 경우
	- 금융, 주거 등 계약 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 범죄, 사기 피해 노출이 상당히 우려되는 경우
가족후견인의 부담	- 돌봄 지속성 불안
	- 비공식적지지 체계 단절
	- 신뢰하기 어려운 가족후견인
공공후견인의 자질 문제	- 복지서비스 관련 정보 부족
	- 고령화된 후견인
	- 발달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 부재
공공후견제도의 구조적 한계	- 누구나 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
	- 모호한 업무 범위로 인한 갈등
	-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 부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의 발전 방향	- 의사결정지원 모델 필요
	- 전문기관 설립
	-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전문가 양성 필요
	- 네트워크 및 교육 강화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현행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이용 여부에 따른 장애인 당사자의 어려움, 현장전문가를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등을 검토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살펴본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후견심판기관과 별도로 사법부 내에 재산관리 법정후견인을 관리하는 공공후견관리국과 신상보호인을 관리하는 공공신상보호국을 두고 있다(윤태영, 2014; 제철웅 · 박현정, 2020). 이들은 일종의 공무원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전문가로 양성되고 있으며, 업무 지침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공공후견인의 신분을 적어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후견전문 사회복지사(경기도 사례) 등으로 격상하고, 후견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후견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호주는 후견심판기관 내에 임기 5년의 위원장 · 부위원장과 임기 3년의 법학, 보건 · 의료,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회계학, 약학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후견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장애인 당사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윤태영, 2014). 이와 같이 가정법원 또는 후견전문기관 내에 다학제적인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현재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적 의사결정, 범죄 사기 피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안기구를 중앙 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후견관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발달장애인(장애인서비스과), 정신질환자(정신건강정책과), 치매노인(치매정책과)이 각각 다른 재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견업무에 대한 지원 자체가 체계적이지 않고, 일관성과 통일성도 부족하여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견 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발달장애인만 포함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모든 장

애인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신질환, 치매, 미성년자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년후견청(가칭) 형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법조신문, 2023.5.8.).

둘째,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를 위해 의사결정지원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1대1 방식의 공공후견인과 발달장애인의 매칭 관계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활동지원사와 공공후견인이 담합을 통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갈취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개인별 지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지원보다는 후견 업무에 대한 교육만을 단기간에 중점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의 사례와 같이 지원자 및 대리인의 활동이 의사결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학제 전문가(민사 · 행정위원회)로 구성된 선임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제철웅 · 박현정, 2020).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당사자와 후견인 연계 및 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과 인력 확보에 힘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중앙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후견전문기관, 가정법원 또는 후견법인 등에 다학제적 지원이 가능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강운 (2006). 자기결정권과 평등. 원광법학, 22(1), 269-292.

김나래 (2019).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소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미옥·김새봄·유하얀(20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6(2), 175-201.

김민진·김미옥(2023). 「최중증 발달장애인 의사결정지원 경험: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59, 241-273.

김정인 (202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효정 (2020). 신상영역에서 공공후견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효정, 박인환, 최윤영 (2019).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융합정보논문, 9(5), 228-235.

민병로 (2007).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후견주의. 법학논총, 32(1), 149-170.

박인환 (2012).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 가족법연구, 24(3), 95-128.

배광열. (2017). 법인후견 실무사례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가족법연구』, 31(3), 449-482.

백승흠 (2011). 민법개정안의 성년후견제도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법학논고, 35, 53-80.

복지부 (2025).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안내.

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시행 3주년 점검 심포지엄 자료집.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2025). 공공후견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지원 방안 연구. 한국한마음, 제288호, 24-29쪽.

송인규 (2017). 성년후견제도 관련 실무사례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전문가 후견인(법인) 사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세미나자료.

송영신 (2017). 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정책자료.
오정현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혜경 (2006). 사회복지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권의 제한. 인간연구, 11, 220-235.
유승주, 김용섭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실천경험과 적용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발달장애연구, 21(1), 27-49.
이은정, 김성천 (2018). 한국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0(4), 141-165.
이지은 (2020). 공공후견과 후견법인의 역할. 법학논총, 47, 293-326.
임소연, 이진숙 (2018).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571-602.
제철웅 (2011). 요보호성인의 인권존중의 관점에서 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그 특징,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민사법학, 56, 277-331.
제철웅 (2016). 후견법인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입법적 제안. 가족법연구, 30(3), 111-137.
제철웅 (201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방향성. 입법과 정책, 9(1), 305-328.
제철웅, 최윤영, 유혜인 (2016). 공공후견인의 직무 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23(2), 651-686.
조승현 (2013).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후견제도의 보완으로서 사회적 후견. 민주법학, 52, 113-141.
주은혜 (2023).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후견제도 인식. 미간행 자료.
최현태 (2013). 임의후견계약의 문제점과 법 정책적 제언. 법학논고, 44, 183-21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3). 알기 쉬운 성년후견제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과정의 쟁점과 딜레마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정책과제 보고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2018). 후견인활동 매뉴얼. 서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홍윤정 (2021).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후견인 활동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특정후견 활동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지선 외 (2025). 법제도 개선을 위한 결합 BERT-LDA 기반 장애인 분쟁유형 도출. 한국장애인개발원.

일본 오타시(大田市). 「中核機関とは」. 오타시 공식 웹사이트. https://www.city.oda.lg.jp/ohda_city/city_organization/24a/40/1933/5194 (검색일: 2025.08.10.)

일본 히로시마현사회복지협의회(広島県社会福祉協議会). 「福祉ひろしま 2024年1月号 (권리옹호과 개정판)」. 히로시마복지정보넷. https://www.hiroshima-fukushi.net/fukushi-wp/wp-content/uploads/2024/01/福祉ひろしま-2024年1月号_権利擁護課-訂正版.pdf (검색일: 2025.08.10.)

Accardo, P. J., & Whiteman, B. Y. (1996). Dictionary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Terminology. Baltimore, MD: Paul H. Brookes.

Brock, D. W. (1991). Decision Making Competence and Risk. Bioethics, 5(2).

Buchanan, A. E., & Brock, D. W. (1989). Deciding for Others: The Ethics of Surrogate Decision Mak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ter, B. (2009). Supported Decision-Making: Background and Discussion Paper. Office of the Public Advocate.

Davidson, G. et al. (2015). Supported decision making: a review of the internation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and Psychiatry, 38, 61–67.

Devi, N., Bickenbach, J., & Stucki, G. (2011). Moving towards substituted or supported decision-making? European Journal of Disability Research, 5.

Devi, N. (2013).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personal autonomy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Law, Medicine and Ethics.

Dunn, M. C., Clare, I. C. H., Holland, A. J., & Gunn, M. J. (2008). Substitute decision-making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living in residential care. Health Care Analysis, 16.

Dunn, M. C., Clare, I. C. H., Holland, A. J., & Gunn, M. J. (2010). Living 'a life like ours': Support workers' accounts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in residential care hom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4(2).

Gooding, P. (2013). Supported decision-making: A rights-based disability concept and it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law. Psychiatry, Psychology and Law.

Han, J. W. (2019). An Ethnographic Study of the Service Processes of Migrant Chinese-Korean Caregivers for Hospital Patient. The Korean Journal of Multiculture & Peace, 13(1), 116-138.

Hooyman, N. R., & Kiyak, H. A. (1999). Social Gerontology: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Hwang, N. M. (2010). An analysis of the debates on introduction of public caregivers' services in acute medical centers. The Forum of Health and Welfare, 170, 60-71.

Jameson, J. M. et al. (2015). Guardianship and the Potential of Supported Decision Making with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Research and Practice for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40(1).

Janicki, M. P. et al. (2002). Health characteristics and health services utilization in olde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living in community residenc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46(4), 287-298.

Kohn, N. A., Blumenthal, J. A., & Campbell, A. T. (2012). Supported decision-making: A viable alternative to guardianship. Penn State Law Review.

Kohn, N. A., & Blumenthal, J. A. (2013). A critical assessment of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persons aging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Disability and Health Journal, 7(1).
Lavin, C. (2003). The paradox of ageing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reasing needs, declining resources. Ageing International, 28(2), 135–154.
Llewellyn, G. et al. (2010). Health status and coping strategies among older parent-carers of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6), 1176–1186.
Mencap. (2012). Stuck at Home: The Impact of Day Service Cuts on People with a Learning Disability. https://www.mencap.org.uk/
Mencap. (2017). Supporting People with Profound and Multiple Learning Disabilities: Core & Essential Service Standards.
Minnes, P. M., & Woodford, L. (2004). Well-being in aging parents: Caring for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Journa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1(1), 62–63.
Moss, S., & Patel, P. (1993). The prevalence of mental illness in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over 50 years of age. The Irish Journal of Psychology, 14(1), 110–129.
Northway, R., Rees, S., Davies, M., & Williams, S. (2017). Hospital passports, patient safety and person-centred care: A review of documents currently used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UK. Journal of Clinical Nursing.
Perry, J., & Felce, D. (2003). Quality of life outcom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staffed community housing services.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16.
Simpson, M. K. (2007). Community-based day services for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the UK: A review and discussion.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4(4), 235–240.
Tuffrey-Wijne, I., Giatras, N., Goulding, L., et al. (2013). Identify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strategies to promote a safer environment for pati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NHS

한국장애인개발원
koddi.or.kr

hospitals: A mixed-methods study. Southampton (UK): NIHR Journals Library, Health Services and Delivery Research, No. 1.13.

Van der Putten, A., & Vlaskamp, C. (2011). Day services for people with profound intellectual and multiple disabilities.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8(1), 10–17.

Wehmeyer, M. L., Schwartz, M.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etermination and quality of life for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 Disabilities, 33(1), 3–12.

Wolfensberger, W. P. et al. (1972). The Principles of Normalization in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 on Mental Retardation.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 연구

발 행 일 : 2025년 9월
발 행 인 : 이경혜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사단법인 에스디워크 동행

ISBN 978-89-6921-792-9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